

1. 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 1. 11. 공포) 하였음.

「수산업법」에서 정한 제도와 절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8개의 해양수산부령 중 「수산업법」 소관 4개의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하여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수산업법」 전부개정시 반영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세부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어구관리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

- 1) 어구생산업과 판매업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88조)
- 2) 어구생산업과 판매업자의 어구생산량 등의 기록방법을 정함(안 제89조)
- 3)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이나 판매업을 하거나, 생산·판매업자의 이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안 제90조)
- 4)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어구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91조)
- 5)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와 폐어구와 유식어구의 수거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안 제92조)

6) 어구 실명제 표시방법을 별표로 정함(안 제93조)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허가규칙 별표7)

7) 어구 수거해역 및 수거기간이 지정되었을 때 어업인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94조)

8) 폐어구 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폐어구 관리대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95조)

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절차 마련(안 제96조)

1) 시범사업 적용 내용,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정함

다.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를 반영

1)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대응하여 해양포유류 혼획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근해어선에 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를 추가(안 제102조)

2) 「허가규칙」과 「면허규칙」의 통합에 따라 허가어업(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정과 면허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관리선 규정을 통합하고,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안 제22조부터 제25조, 별표 4)

3)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조문 정비(안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3.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3. 어장의 재개발 및 그 밖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군수·자

치구의 구청장(이하 “계획수립관청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과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④ 계획수립관청의 장은 제3항의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계획수립관청의 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 보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⑥ 계획수립관청의 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 알려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에게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①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서 사본
3. 해당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자료표 사본
4. 해당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합의견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여부
2. 어업면허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공동이익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의 수산 관계 법령과의 상호관계

제4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
2.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종류
3. 허가를 받으려는 어선의 소유 등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과 주요 제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4. 관련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종합의견
5.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 경영실적과 어업기술의 보유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 금지 또는 제한 여부
2.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의 수산 관계 법령과의 상호관계

제5조(공동신청 시의 변경신고)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신청 후에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신청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또는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6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신청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면허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7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줄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물·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9.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제8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작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 및 별표 3의 작성에 따라 작성하고,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들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으로 적을 것.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할 것

제9조(어장관리실태의 기록·관리) ① 법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어업의 종류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동의서 등) 영 제5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어촌계의 경우에는 총회 의사록 사본)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12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가두리시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총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가두리시설이 어장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 해당 연도의 어업시기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시설물 중 그물을 철거할 것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제13조(가두리시설의 설치통지 등) ① 제12조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정치망어업권의 어장구역도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해당 시설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이를 적은 후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가두리시설설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4조(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마을어업권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에 따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별표 4에서 정하는 포획·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낚·호미, 칼, 갯이 또는 삽

2. 틀이류·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15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낙도 또는 무인도와 맞닿은 수면에 대하여 마을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방·군사상 또는 외교상 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섬과 맞닿은 수면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육지 쪽의 해안선에서 무인도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미만인 무인도에 맞닿은 수면. 이 경우 육지 쪽 해안선과 무인도까지의 거리는 만조 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로서 해당 무인도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소유인 경우 등의 사유로 무인도에 맞닿은 수면이 어업조정상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쉬운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맞닿은 수면

제16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제2항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어업권에 관해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

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연장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제17조(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어업권의 분할인가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어업권분할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어업권의 변경인가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의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

식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어업권자가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해당 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해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신청)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22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 제1항(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어업권자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자로 본다. 이하같다)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
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
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
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
다)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의 경
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마을어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
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가.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어선인 경우 해당 어업
의 유효기간

나.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그 면허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에 관리선을 사용
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2.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

가. 해당 어선이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 그 지정기간

나. 법 제40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
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에 관리

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마을어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어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 전까지 해당 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어선에 대해서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⑧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3.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수산동물의 생육과 번식을 해롭게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생물을 말한다)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

⑨ 제5항에 따른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구의 설치·철거나 이에 수반되는 어망·돛 등 어구 운반 행위 시 지정된 관리선을 이용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 관리선이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23조(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5항(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어업권자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자로 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1. 어업면허(허가)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3.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법 제27조 및 이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때

제24조(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록사항변경) ①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1항(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어업권자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자로 본다)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기록사항 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마을어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대해서만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않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27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업재개(再開)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어업권포기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는 경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제29조(다른 사람에게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어업을 경영할 때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30조(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과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면허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

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정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처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제32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과 양식방법
2. 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4. 처분내용
5. 처분연월일
6.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 · 주소와 생년월일

제33조(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제34조(어업면허처분 결과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서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5조(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어업권의 행사계약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가장 적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어장관리규약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어장에 입어(入漁)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입어방법·입어기간·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入漁者)의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어업의 시기

7. 어장의 시설물과 사용어구의 종류

8. 자원조성, 유해생물 제거,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

· 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권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규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장관리규약이 적절한 경우 승인번호와 승인일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적고 어업면허가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③ 어장관리규약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내용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 어업면허의 면허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업권을 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 면허를 취소 또는 입어를 제한·정지·금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39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 어선

2.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해선망어업: 어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어업허가 신청기관)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양륙항(揚陸港)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이 경우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 이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같은 것으로 본다.

3.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가능
4.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제40조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2. 첨부서류

가. 근해어업·연안어업의 경우

- 1)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 2)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한다)

나. 구획어업의 경우

-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3)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 4)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5) 어선검사증서 사본(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권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2항제2호의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어 허가신청서와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첨부서류를 붙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는 그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에 보내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후 어업허가신청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허가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5조 및 영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제5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이 규칙 제5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연근해어업 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2. 한시어업 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② 허가권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해당 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하며, 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선명·톤수와 기관의 마력 등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그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해당 허가증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모든 허가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해야 한다. 이때 어업의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한 후 다른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보내고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어선에 추가로 허가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어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도록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의 어업허가증 발급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어업허가 등의 번호)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어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업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표 7에 따른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44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 시·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5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②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한다)

3. 기존 어선의 폐기·수출 또는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이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4. 저당권자의 동의서(제3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抵當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선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어선의 폐기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는 새로운 어선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어선을 다시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신청하려면 그 허가받은 어선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⑥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한 척을

추가하여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법 제40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와 규모, 설비 등 근해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법 제40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및 부속선 등 연안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자(이하 “남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남북피해자 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남북자가 허가받았었던

연안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었던 연안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가목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가목에 따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북자의 가족(「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었던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었던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가목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

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가목에 따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속선의 수·규모 제한의 내용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지킬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⑤ 제4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속선의 수, 규모 등 제한의 내용 및 그 적용기간은 별표 11과 같다.

⑥ 제4항 각 호의 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같은 항에 따라 부속선의 수

와 규모가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47조(어업허가의 유예) ①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과 동시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실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않아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끝나는 날 현재 「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별표 12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2. 법 제34조제1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업을 폐업한 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競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허가의 유예기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12과 같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직접 그 해당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에서 어선을 도입했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따라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갱신해 새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어구·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 등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6.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7. 어선을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
 8.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으로 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으로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 ③ 저장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새

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표 12 제3호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허가권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표 12에 따른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어업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49조(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① 법 제34조제1호

·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 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관리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의 확인은 어선이 출항한 후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차수별로 포획·채취된 어획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어획물 중량의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51조(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이유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역의 범위는 각 지점을 위도 및 경도좌표로 적어야 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결과
4.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할 내용

5.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같은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어업자와 조정
한 내용

6.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한시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서

7. 법 제9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가로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52조(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가 등) ① 한시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52조제3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사항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한시어업허가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자가 속한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한시어업을 하려는 경우 그 단체에 속한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제5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내용
2.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 과거 3년 동안의 어업자별·어업의 종류별·어종별 어획실적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어업의 특성 및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한시어업허가의 요건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어업자에게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2. 해당 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어업관리단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4.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및 해당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산연구소장

⑤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받은 조업기간이 끝나는 날 15일 전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 한시어업으로 인한 어획실적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2. 한시어업 허가증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조업기간 및 포획대상 어종별 어획할당량 등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과 어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사본(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등의 기준

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선과 같고 어선검사증서 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을 것

나.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구와 같고 영 별 표 2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적합할 것이다.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시설과 같고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 자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명칭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5조(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①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그 원본과 대조해야 한다. 다만, 어선검사증서 사본에 어선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6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어구·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경우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7.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3.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새로운 어구·어로방법과 어장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물학원장의 의견서

⑤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매분기마다 작성해서 관리해야 한다.

제57조(수수료)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의 신청 수수료는 1건당 2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58조(연구어업·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어법 및 어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그 어구·어법 및 어장 등에 관한 사항

제59조(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4항, 법 제50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48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영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 규칙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⑥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다목의 배달증명으로 해야 한다.

⑦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60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신규허가만 해당한다)

2.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27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4.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 동시 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어업허가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하려는 경우

2.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1조(신고어업의 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실정 및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도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 증명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신고가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8항제1호의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8조제8항제2호의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제63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어업의 시기
2. 포획·채취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주요 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

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9.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10.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

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어업허가증에 적은 후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해서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제64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군·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

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등에 그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어업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5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 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해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어업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7조(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어업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신고관

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제43조 및 제48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55조에 따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4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어업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제43조제6항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어업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어업

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보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9조(어업허가대장 기록사항)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한 경우
4.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라 어업허가사항 또는 어업신고사항을 변경해서 허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68조에 따라 어업폐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6.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7.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해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70조(휴업 등의 신고서)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의 휴업 또는 휴업기간 중의 어업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 시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
2. 어업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

제72조(공익상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①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영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허가의 조건 및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일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조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繫留) 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의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의 회수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어획물운반업

- 제73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8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사람(이하 “어획물운반업자”라 한다)에게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획물운반업 등록관청의 장은 어획물운반업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을 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어획물운반업자가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

이 할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4조(시설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획물운반선: 산소공급시설 및 활어수조
2. 제1호 외의 어획물운반선: 냉동·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제75조(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에 따라 어획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말한다.

1.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제76조(등록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사람 및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1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을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어선이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이나 정지 또는 어선의 계선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제77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5와 같다.

제78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번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부여하되, 등록관청의 약칭·어획물운반업의 명칭·등록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강화 어획물운반업 제2007-1호

제79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어획물운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 제54조에 따라 준

용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획물운반업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이름을 고친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사람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주요 부분의 치수, 기관의 마력 및 주요 시설을 변경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사항을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어 지체 없이 이를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사람의 주소지나 등록을 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폐지의 신고를 받으면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어획물운반업 폐지의 신고를 한 사람, 그의 주소지 또는 등록을 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0조(휴업의 신고 등) 어획물운반업자는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어획물운반업자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에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후에 그 어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하는 경우

제82조(등록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대장을 관리하고 제73조제3항,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사항의 변경 및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어획물운반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5장 어업조정 등

제83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제84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형태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한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허가권자는 30일 이내에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어구의 규모등에 대

하여 어업관리단장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허가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관한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85조(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어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어업시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 어업권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에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1. 철거대상 시설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철거작업이 곤란한 경우

제86조(시설물의 철거기간)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87조(표지의 설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에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어야 함
2.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88조(어구생산업·판매업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어구생산업·판매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신고서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 영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어구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장(수입의 경우 수입국) 또는 판매장 및 보관창고의 소재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대장에 신고번호, 신고등록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89조(어구생산량 등의 기록방법)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자 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일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1. 어구의 종류
2. 어구별 생산량 또는 수입량
3. 어구별 판매량
4. 구입한 도·소매업자 또는 어업인

제90조(영업정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 명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폐쇄
2.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훼손·제거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폐쇄
3.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소지한 경우: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폐쇄

제9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해야 한다.

제9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구의 생산, 유통, 사용 현황
2. 폐어구의 발생 현황
3. 폐어구의 수거·처리 현황
4. 폐어구의 재활용 현황
5. 친환경 어구 및 자원 관리형 어구 개발 및 보급 현황
6. 어구 및 폐어구 관리·수거·처리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 현황
7. 그 밖에 어구 및 폐어구의 관리·수거·처리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93조(어구 실명 표시방법)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어구의 실명 표시 방법은 별표 16에 따른다.

제9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통보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리집에 공고하고, 해당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 및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2. 수거하는 자와 수거 방법

제95조(폐어구 집하장의 설치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폐어구 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9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달리 적용되는 제한의 내용은 별표 17과 같다.

②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기간은 1년을 단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을 늘려 달리 정할 수도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국립수산물학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심사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97조(보상청구서)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3호 서식에 따른다.

제98조(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56조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액 조사계획서, 기관설립증서 사본 및 기관의 조직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이력서 및 최근 3년 동안 손실액의 조사실적 등을 포함한다)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어구 등 장비의 종류 및 조달방법
5.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최근 3년 동안의 손실액 조사실적(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 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의 근거법령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손실액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과 그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명칭별 또는 양식방법별 손실액의 산출방법과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어구 등 장비의 종류
8. 어업별 손실액 조사에 따른 조사경비와 수수료 내용
9. 그 밖에 손실액조사에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정하는 사항

⑤ 행정관청은 제4항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제99조(재결신청서 등)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분쟁의 경우: 별지 제76호서식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 별지 제77호서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100조(보고) 시·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처분, 신고수리 현황·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근해어업: 별지 제79호서식

2. 연근해어업 외의 어업 및 어구생산업, 어구판매업: 별지 제80호서식

제101조(실태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5년마다 허가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관한 사항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2. 해당 어선의 출항·입항 및 어선의 조업위치 보고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선의 유류 사용실적

4. 어획물의 양륙 및 매매실적

5. 그 밖에 조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2조(보고 대상 및 서식) ①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해양포유류 혼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별지 제8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별지 제82호서식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이하 “무선설비”라 한다)를 갖춘 어선

제103조(보고서의 작성) ① 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조업일마다 이 규칙 제102조에 따른 보고서(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104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①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

103조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해양포유류 혼획 여부를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본부에 1일 1회 이상 보고하게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

②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본부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해양포유류 혼획 여부를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5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한

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안전본부의 장에게 어획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6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4조와 제105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7조(보고서의 용도) 이 규칙에 따른 보고서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2023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2023년 1월 1일
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2023년 1월 1일
4. 제46조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에 따른 어업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2023년 1월 1일
5. 제48조 및 별표 12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2023년 1월 1일
6. 제63조에 따른 어업의 변경허가: 2023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어장기본도의 어장의 구획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어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어장의 구획,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어장의 면적(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표시한다.
 - 나. 어장기본도에는 이동명칭과 어장에 인접한 특정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 개발하려는 어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하여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 값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상에 같이 표기한다.
2. 기존어장과 개발하려는 어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존어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려는 어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 가. 정치망어장: 홍색
 - 나. 해조류양식어장: 주황색
 - 다. 패류양식어장: 황색
 - 라. 어류등양식어장: 녹색
 - 마. 복합양식어장: 청색
 - 바. 협동양식어장: 남색
 - 사. 마을어장: 자색
3. 어장 간의 거리와 어장구역의 획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조수로 등을 고려하고 어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 나. 어업별 어장구역의 획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 1) 양식어장구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양식어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어장을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간의 거리 등 어장의 시설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2) 정치망어장구역: 정치망어장은 과거의 어업실적과 영 제6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적지 여부 및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어장을 구획해야 한다.
 - 3) 마을어장구역: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을 미리 실측하여 어장 수심한계의 범위에서 어장을 구획해야 한다.
 - 다. 제7조에 따라 같은 수면에 2종 이상의 어업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어업에 지장이 없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하며, 어업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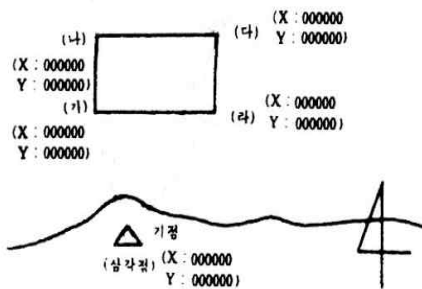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제41조제1항제2호나목1]

1. 어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조업방법
3.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지선
 ※아래 가.나.다.라 각점의 좌표
4. 수면의 구역: 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5. 면적: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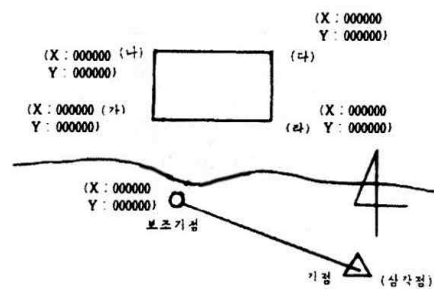
구분	X(N)	Y(E)
가	000,000	000,000
나	000,000	000,000
다	000,000	000,000
라	000,000	0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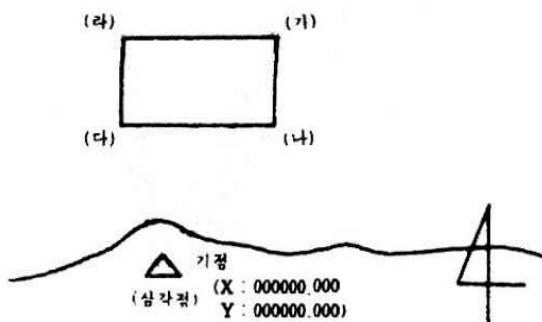
[별표 3]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제8조 관련)

1. 어업의 종류: 축척: 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어장의 면적: m^2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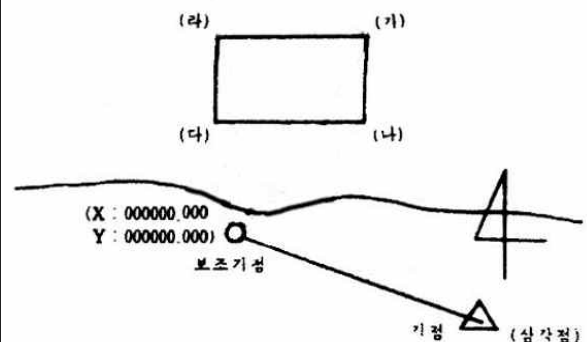
구획점	직각좌표		경위도						점간거리(m)	
	X(N)	Y(E)	위도			경도			구간	거리
가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가-나	0,000.0
나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나-다	0,000.0
다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다-라	0,000.0
라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라-가	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257mm×364mm(인쇄용지(2급) 60g/m²)

[별표 4]

마을어장 안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14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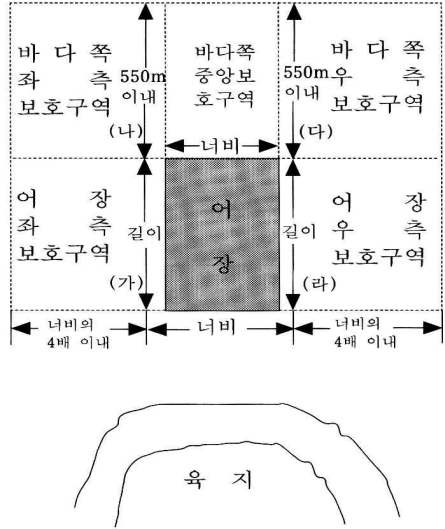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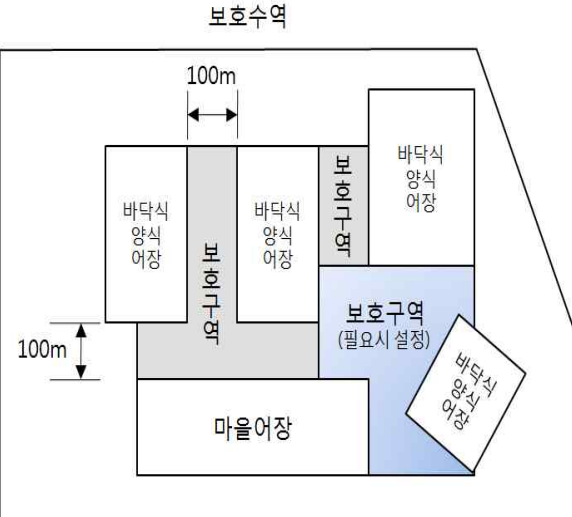
지 역 별	포획·채취방법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경기도· 충청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마을어장형망선, 법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형망어업,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또는 나잠. 다만, 마을어장형망선,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전복·소라·키조개 및 고등류 외의 패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마을어장형망선·자원관리채취선, 법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형망어업,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또는 나잠. 다만, 강원도·경상북도의 마을어장형망선,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어장형망선·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전복·소라·키조개 및 고등류 외의 패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제25조제3항 관련)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면허어업	정치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
	마을어업	총톤수 20톤 미만
구획어업	건강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제26조 관련)

구 분	보 호 구 역	보호구역 도해(예시)
1. 정치망어업	가. 어장의 바다 쪽 중앙 보호구역은 각각 어장 길이의 연장선 이내의 수면. 다만, 바다 쪽 보호구역의 길이는 55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어장의 좌·우측 보호구역과 어장의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의 좌·우측 보호구역의 총길이는 어장너비의 8배 이내로 하되, 2천 60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어장길이: (가)기점에서 (나)기점 또는 (라)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 ※ 어장너비: (가)기점에서 (라)기점 또는 (나)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
2. 마을어업 및 바닥식 양식어업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장의 배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초과 200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비고

제2호에 따른 보호구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등대(북위 34도36분32.7초, 동경 127도39분18.8초)와 여수시 돌산읍 돌산항(북위 34도36분46.9초, 동경 127도43분12.5초)을 잇는 선 안쪽의 가막만 해역에만 정할 수 있다.

[별표 7]

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43조 관련)

1. 허가어업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번호를 부여하되, 행정기관의 약칭, 어업의 종류, 허가연도, 일련번호의 차례로 적는다.

(예시) 부산 대형트롤 제2010- 호

강화 연안자망 제2010- 호

2. 신고어업

어업의 종류별로 신고번호를 부여하되, 행정기관의 약칭, 어업의 종류, 신고연도, 일련번호의 차례로 적는다.

(예시) 여수 나잠 제2010- 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

(제46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부속선의 수 및 규모

어업의 종류	기관의 마력	부속선			비고
		종류	척수	톤수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	—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	—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대형트롤어업	—	—	—	—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	—	—	—
대형선망어업		등선	2척 이내	—	—
		운반선	—	—	—
소형선망어업	—	등선	1척 이내	10톤 미만	
		운반선	1척 이내	10톤 미만	
근해채낚기어업	—	—	—	—	—
근해자망어업	—	—	—	—	—
근해안강망어업	—	—	—	—	—
근해붕수망어업	—	—	—	—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어로 보조선	2척 이내	1톤 미만	—
근해장어통발어업	—	—	—	—	—

근해문어단지어업	—	—	—	—	—
근해통발어업	—	—	—	—	—
근해연승어업	—	—	—	—	—
근해형망어업	—	—	—	—	—
기선권현망어업	예인선: 회전수 1,200 미만은 22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350마력 이하	가공 및 운반 겸 용선	2척 이내	150톤 미만	—
		어로 보조선	2척 이내	—	—
잠수기어업	—	—	—	—	—

비고

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예인선)의 어선 기관의 마력이 1997년 2월 10일 이후 크랭크축(crankshaft) 끝 커플링(coupling)부터 제동출력으로 측정한 기관마력인 경우에는 기관마력의 5퍼센트의 오차범위에서 그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아 꽃계를 포획하는 근해자망어업은 인천광역시장이 그 해당 해역의 어업여건과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사항을 고려해 부속선의 규모와 척수를 정해서 허용할 수 있다.

2. 설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다음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

- 1)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81킬로와트
- 2)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02킬로와트
- 3)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20킬로와트
- 4)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32킬로와트

5)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141킬로와트

나. 잠수기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compressor)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해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해야 한다.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제46조제2항 관련)

1.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어업의 종류	허가의 정수
연안개량 안 강 망 어 업	<계 547건> 인천광역시: 99건 경기도: 55건 충청남도: 224건 전라북도: 105건 전라남도: 58건 경상남도: 6건
연안선망 어 업	<계 240건> 부산광역시: 6건 강원도: 18건 충청남도: 36건 전라북도: 16건 전라남도: 69건 경상북도: 20건 경상남도: 67건 제주특별자치도: 8건
연안통발 어 업	<계 4,676건> 부산광역시: 368건 인천광역시: 52건 울산광역시: 205건 경기도: 32건 강원도: 122건 충청남도: 203건 전라북도: 38건 전라남도: 822건 경상북도: 694건 경상남도: 2,131건 제주특별자치도: 9건
연안조망	<계 624건>

어업	충청남도: 474건 전라북도: 150건
연안선망어업	<계 7건> 강원도: 7건
연안자망어업	<계 16,207건> 부산광역시: 535건 인천광역시: 372건 울산광역시: 359건 경기도: 583건 강원도: 1,526건 충청남도: 2,496건 전라북도: 720건 전라남도: 2,977건 경상북도: 2,054건 경상남도: 4,213건 제주특별자치도: 372건
연안들망어업	<계 598건> 부산광역시: 42건 강원도: 3건 전라남도: 31건 경상남도: 25건 제주특별자치도: 497건
연안복합어업	<계 24,679건> 부산광역시: 847건 인천광역시: 538건 울산광역시: 360건 경기도: 451건 강원도: 1,458건 충청남도: 2,387건 전라북도: 822건 전라남도: 8,341건 경상북도: 1,107건 경상남도: 6,900건 제주특별자치도: 1,468건

비고

1.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허가의 정수를 합한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종전의 허가관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통보된 정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 넘어 설정된 조업수역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업의 종류별 시·도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어로한계선 인근지역 읍·면 또는 도서별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별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정할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읍·면 또는 도서별로 허가된 어업허가의 건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허가된 어업은 그 읍·면 또는 도서별 조업이 허용된 수역에서 유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 가.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조업이 허용된 수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어선이 매각·임차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어선에 처분된 어업의 허가로 환원해야 한다.
 - 나. 해당 어선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감척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3. 1994년 5월 13일 이전에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해당 어업을 폐업하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감척된 경우에는 감척되는 어선에 대한 연안어업의 종류별·지역별 허가의 건수를 이 표의 연안어업의 종류별·지역별 허가의 정수에서 뺀 수를 연안어업의 종류별·지역별 허가의 정수로 본다.

2. 부속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가. 시·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2)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부속선으로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나.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집어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고시할 수 있다.

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제46조제3항 관련)

1. 정치성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허가의 정수
건간망어업	<계 378건> 인천광역시: 74건 경기도: 21건 충청남도: 2건 전라남도: 226건 경상남도: 55건
건망어업	<계 302건> 부산광역시: 13건 울산광역시: 49건 강원도: 25건 경상북도: 58건 경상남도: 157건
들망어업	<계 37건> 부산광역시: 1건 경상남도: 42건
선인망어업	<계 3건> 전라남도: 2건 경상남도: 1건
승망류어업	<계 1,831건> 부산광역시: 25건 울산광역시: 7건 강원도: 63건 충청남도: 103건 전라북도: 19건 전라남도: 1,085건

	경상북도: 95건 경상남도: 434건
안강망어업	<계 13건> 인천광역시: 13건
장망류어업	<계 1,987건> 경기도: 1건 충청남도: 478건 전라북도: 63건 전라남도: 1,380건 경상남도: 59건
지인망어업	<계 17건> 부산광역시: 3건 울산광역시: 3건 경상북도: 10건 경상남도: 1건
해선망어업	<계 2건> 경기도: 2건

2. 이동성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허가의 정수
새우조망어업	<계 519건> 전라남도: 347건 경상남도: 172건
실뱀장어안강망어업	<계 732건> 인천광역시: 131건 경기도: 48건 충청남도: 222건 전라북도: 120건 전라남도: 211건

패류형망어업	<계 413건> 강원도: 262건 전라남도: 137건 경상북도: 14건
--------	--

비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감척된 경우에는 감척되는 어선에 대한
구획어업의 종류별·지역별 허가의 건수를 이 표의 구획어업의 종류별·
지역별 허가의 정수에서 뺀 수를 구획어업의 종류별·지역별 허가의 정
수로 본다.

[별표 11]

달리 적용되는 부속선의 수·규모 제한의 내용 및 그 적용기간(제46조제5항 관련)

1. 부속선의 수 및 규모: 제46조제4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수와 규모는 부속선의 종류와 관계없이 총 2척 이내, 1척당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한다.
2. 구역: 제1호에 따른 부속선의 수 및 규모 제한은 다음 각 목의 좌표와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부도 참조) 바깥쪽의 해역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 가. 북위 35도 12분 5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지점에서 동쪽으로 연장해서 해안선에 접하는 선
 - 나. 북위 35도 04분 08초 동경 125도 58분 36초
 - 다. 북위 34도 52분 24초 동경 125도 54분 18초
 - 라. 북위 34도 41분 07초 동경 125도 51분 08초
 - 마. 북위 34도 33분 51초 동경 125도 57분 32초
 - 바. 북위 34도 18분 45초 동경 126도 05분 16초
 - 사. 북위 34도 11분 16초 동경 126도 22분 30초
 - 아. 북위 34도 05분 16초 동경 126도 28분 08초
 - 자. 북위 34도 02분 48초 동경 126도 36분 05초
 - 차. 북위 34도 06분 02초 동경 126도 54분 30초
 - 카. 북위 34도 09분 42초 동경 127도 15분 21초
 - 타. 북위 34도 21분 30초 동경 127도 48분 19초
 - 파. 북위 34도 24분 34초 동경 127도 51분 55초
 - 하. 북위 34도 35분 42초 동경 127도 52분 02초
 - 거. 북위 34도 40분 24초 동경 127도 53분 33초
 - 너. 북위 34도 39분 08초 동경 128도 02분 46초
 - 더. 북위 34도 41분 46초 동경 128도 18분 02초
 - 러. 북위 34도 38분 36초 동경 128도 23분 50초
 - 머. 북위 34도 39분 05초 동경 128도 36분 39초
 - 버. 북위 34도 41분 53초 동경 128도 43분 32초
 - 서. 북위 34도 47분 17초 동경 128도 48분 02초
 - 어. 북위 34도 53분 45초 동경 128도 48분 42초
 - 저. 북위 34도 59분 58초 동경 129도 05분 10초
 - 쳐. 북위 35도 21분 35초 동경 129도 25분 21초
 - 커. 북위 35도 29분 28초 동경 129도 30분 25초
 - 터. 동해안 해안선에서 3해리 떨어진 지점을 연결한 선

퍼. 북위 38도 33분 10초 동경 128도 28분 32초 지점에서 서쪽으로 연장해서 해안선에 접하는 선

[부도]



3. 적용기간: 제1호의 제한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2]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해당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의 제한기간(제47조제3항 관련)

허가취소의 사유	허가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2.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2년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2년
4.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은 경우	2년
5.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	2년
6. 사전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1년
7.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8. 그 밖에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 6개월

비고: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이 그 허가제한기간 내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허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때의 남은 제한기간에 해당 호의 허가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을 2년으로 한다.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53조 본문 관련)

1. 근해어업

가.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면 안 된다.

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해서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면 안 된다. 다만,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이 근해자망어업을 겸업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북위 38도37분·동경135도30분의 교점, 북위 39도 51.75분·동경 134도11.5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동경 132도59.8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동경132도37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동경 132도50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동경 135도30분의 교점을 수선선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다만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경계선이 따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을 넘어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

라. 근해형망어업

- 1)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해서는 안 된다.
- 2)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면 안 된다.

마. 잠수기어업

- 1) 잠수기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면 안 된다.
- 2)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면 안 된다.

2. 구획어업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포획된 것 중 실뱀장어를 제외하고는 방류해야 한다.

나. 패류형망어업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면 안 된다.

[별표 14]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 및 어선에 대한 등록제한기간

(제76조제1항 관련)

등록취소의 사유	등록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1년
2.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어획물, 양식물 또는 그 제품(이하 “어획물등”이라 한다)을 운반한 경우	1년
3.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1년
4.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등이 아닌 어획물등을 운반한 경우	6개월
5.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처분 또는 어선의 계선처분을 위반하여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6개월
6. 해상에서 어획물을 매매한 경우	6개월
7.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6개월
8.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등을 운반한 경우	5개월
9. 그 밖에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5개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제77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획물, 양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해서는 안된다.

나.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이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어획물, 양식물 또는 그 제품은 그 운반을 의뢰한 어선의 양륙항에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해야 한다.

라.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마. 해상에서 어획물, 양식물 또는 그 제품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이 노후되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해 새로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어선을 폐기하거나 수출 또는 다른 어선으로의 대체신청 등(이하 "어선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어선의 폐기등을 하는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어획물운반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시설된 연료유 탱크 외의 장소에 유류를 적재·운반해서는 안된다.

2.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가 가공하는 수산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어획물만을 운반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4 제8호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획물만을 운반하여야 한다.

[별표 16]

어구 실명 표시 대상 어업 및 표시 방법(제93조 관련)

1. 어구 실명 표시 대상 어업은 다음과 같다.

- 가. 근해자망어업
- 나. 근해안강망어업
- 다. 근해통발어업
- 라.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마. 연안통발어업
- 바. 연안자망어업
- 사. 실뱀장어안강망어업

2. 표시방법

어구를 수면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어구소유자 성명,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어구소유자 성명(전화번호): 0 0 0(000-0000-0000)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갯수(통수, 틀수 등) 다음에 해당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별표 17]

달리 적용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의 내용 및 적용기간

(제96제 제4항 관련)

1. 제한의 내용

가. 근해안강망어업

1) 어구

영 별표 2 II 제12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망구에 가장 가까운 어류분류망에만 어류 탈출구를 설치하고, 나머지 어류분류망에는 어획물 분류 작업을 위한 개폐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그물코의 규격

영 별표 8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끝자루를 제외한 자루그물 중 일부에는 어구 전개(展開)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세망(細網)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근해형망어업

1) 어구

영 별표 2 II 제20호가목2)·6) 및 8)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1과 같다.

가) 고정틀 윗면에 자루그물의 상부가 직접 부착되어 있고 자루그물의 하부는 고정틀 밑면에서 12미터 이내로 떨어져 있는 어구. 이 경우 자루그물에는 발줄(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발돌 및 체인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가)의 고정틀 밑면과 자루그물의 하부 사이에 3개 이내의 체인이 부착된 어구. 이 경우 체인은 다음의 기간 구분에서 정한 개수의 범위에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 이내

(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3개 이내

다) 총어획량의 3퍼센트 이내로 패류 외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가 부착된 어구

2) 어구사용 금지기간

영 별표 7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1)의 어구의 사용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잠수기어업

1) 어구

영 별표 2 II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 5마력 이하의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구역

1)의 어구는 전라남도 여수시 관할 수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1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조업하려는 수역에서 가장 인접한 마을어업 어장의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 어구

영 별표 2 III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4)에도 불구하고 자루그물의 입구의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압해로 구성된 어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통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2) 어법

1)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2 III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을 닻으로 고정시킨 후에 어선 선미(船尾)에서 자루그물을 투망하고 수해와 압해를 수중으로 내려 투망을 완료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해와 압해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린 후 자루그물을 거두어들여 양망하는 어법으로 조업한다.

3) 구역

1)의 어구 및 2)의 어법은 주)의 해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4) 그물코의 규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업하는 경우 영 별표 8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6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2. 적용기간

제1호의 제한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 다음의 A해역 및 B해역을 말함

A해역: 다음의 좌표와 선을 차례로 연결한 해역(부도 2 참조)

가. 북위 37도 42분 13초, 동경 126도 21분 33초

나. 북위 37도 42분 14초, 동경 126도 19분 54초

다. 나로부터 강화 석모도 최남단까지의 바닷가를 따라 연결한 선

라. 강화 서도면 주문도 최남단

마. 북위 37도 33분 00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바. 북위 37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사. 북위 37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30초

아. 영종도 최서단

자. 강화 장곶돈대 최서단

차. 자로부터 가까지의 바닷가를 따라 연결한 선

B해역: 다음의 좌표와 선을 차례로 연결한 해역(부도 참조)

가. 북위 37도 39분 19초, 동경 126도 31분 54초

나. 북위 37도 39분 19초, 동경 126도 31분 22초

다. 나로부터 황산도 최동단까지의 바닷가를 따라 연결한 선

라. 영종도 최동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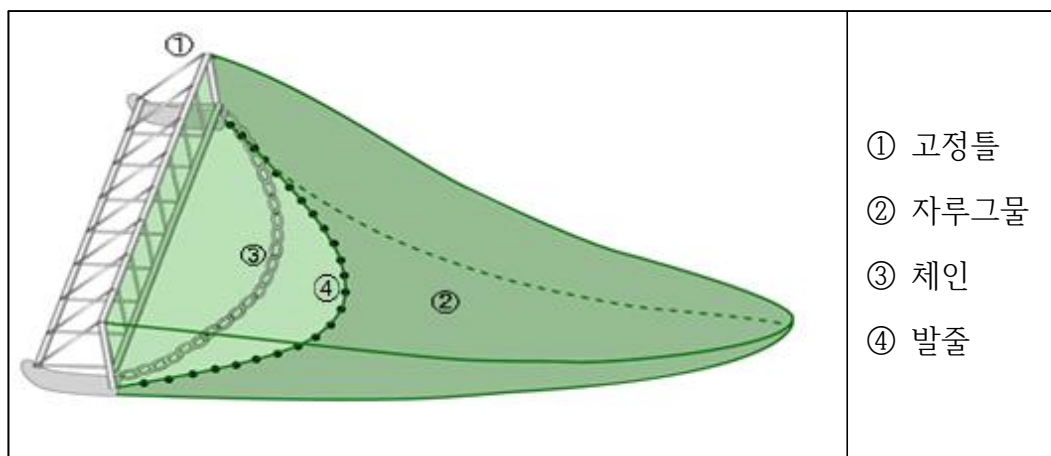
마.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26도 36분 16초

바. 북위 37도 36분 04초, 동경 126도 33분 36초

사. 바로부터 가까지의 바닷가를 따라 연결한 선

[부도 2]

근해형망어업 어구 겨냥도



[부도 2]



어장이용개발계획서

(단위: 건, ha)

① 총 개발 적지 면적	기개발어장			⑤ 총 미개발 적지 면적	⑥()년 ()개발계획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상황					⑰ 개발하려는 사유	
					⑦ 어업별			⑧ 수면의 위치	⑨ 수면의 번호	⑩ 건수	⑪ 면적	⑫ 국가 공익면	⑬ 자원 보호면	⑭ 어업 조정면	⑮ 수산 법규면		⑯ 그 밖의
	② 어업별	③ 건수	④ 면적		종류	어업의 방법	품종										

작성 방법

- ①란에는 관할 시·군·구 관내 총 개발적지 면적을 적습니다.
- ② ~ ④란에는 이미 개발한 어업의 종류(정치망어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 및 마을어업)와 건수, 면적을 적습니다.
- ⑤란에는 관할 시·군·구별 총 미개발적지 면적을 적습니다.
- ⑥란에는 앞 ()에는 개발연도를, 뒤 ()에는 정기, 변경이라 적습니다.
- ⑦란 중 어업의 방법란에는 마을어장은 포획·채취수단을 적습니다.
- ⑧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위치를 적습니다.
- ⑨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번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적습니다.
- ⑩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 ⑪란에는 이에 대한 면적을 적습니다.
- ⑫란에는 「수산업법」 제4조제4항·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해야 할 법규의 관련 여부를 검토 후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⑬란에는 보호수면, 수산자원보전지구, 소상어류보호수면 등 그 밖의 수산자원 보호상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 ⑭란에는 보호구역 저축, 어장과밀, 어도차단, 어장구역 중복, 인근어장과의 분쟁예상 등 그 밖의 어업조정상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 ⑮란에는 낙도, 무인도, 어장기점설치 가능 여부, 육지와의 거리, 수심, 인근어장과의 거리, 마을어장안 그 밖의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시책 등 과의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 ⑯란에는 그 밖의 신청수역 개발상 제약사항을 적습니다.
- ⑰란에는 신청수역을 개발하려는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 ⑫ ~ ⑯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음”이라 적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내역서

승인(협의) 근거법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승인(협의)			
수 면 위 치				
승인 또는 협의어업	어업의 종류			
	시 설 방 법		면 적	(ha)
승인(협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 정 항 안		항 로 상	
	어 항 안		군 사 상	
	개 항 안		공 원 안	
	특정지역안			
승인(협의)신 청사유에 대한 지장 유무				
그 밖의 참고사항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주소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포획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ha
	수면의 위치	
면허신청 순위		

「수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1부 2. 시·도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서 사본 각 1부 3. 해당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자료표 사본 1부 4. 해당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종합의견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1. 어업면허(「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가. 개발계획의 내용

①어업의 종류		②시설방법		③ 포획물·채취물		④수면의 번호	
---------	--	-------	--	-----------	--	---------	--

나. 심의근거 및 내용

우선 순위 신청자	⑦「수산업법」 제9조 각 호의 해당 여부					⑧ 「수산업법」 제11조 제2항 에 해당되지 않음	「수산업법」 제13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음		⑨제1항제1호				⑩제1항제2호			
							수산기술자로서 면허 어업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면허 어업의		수산기술자로서 허가어업의		신청일 이전 5년간 허가어업의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다. 심의의견, 조정 의견 및 사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정 의견 및 사유

⑤수면의 면적		⑥수면의 위치	
---------	--	---------	--

「수산업법」 제13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시·군·구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결과 면허의 우선순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정 및 결정결과 우선순위
⑪ 제2항 제1호 해당자	⑫제2항		⑬제3항		⑭ 제4항 해당자	⑮제5항			
	수산기술자로서 신청어업의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의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어촌계	지구별 조합		

심 의 요 령

- ⑦ ~ ⑮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되면 ○표, 해당되지 않으면 ×표를 합니다.
- ⑩란의 허가어업에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제외합니다.
- ⑧란에 ×표가 있는 자는 ⑨란 이하 난에 ○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순위는 ⑨ ~ ⑮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합니다.

2. 어업면허(「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8호)

가. 개발계획의 내용

①어업의 종류		②시설 방법		③포획물· 채취물, 양식물		④수면의 번호		⑤수면의 면적		⑥수면의 위치	
------------	--	-----------	--	-------------------	--	------------	--	------------	--	------------	--

나. 심의근거 및 내용

우선 순위 신청자	⑦ 「수산업법」 제13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면허의우선순위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정 및 결정 결과 우선 순위
	제7항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제3호 해당자	제4호 해당자		

다. 심의의견, 조정 의견 및 사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정 의견 및 사유

심 의 요 령

1. ⑦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되면 ○ 또는 면적(ha)을 적고, 해당되지 않으면 ×표를 합니다.

520mm×268mm(신문용지 60g/㎡)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 · []변경, []지분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 내용	어업의 종류			신청면적		ha	
				포획물·채취물			
	면허신청연월일						
	년 월 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항	변경 전 대표자			선정 또는 변경 후 대표자		
	공동신청자의 공유자 지분 변경사항	성명	변경 전 지분		변경 후 지분		

「수산업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어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변경 또는 지분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 적		
	주 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포획물·채취물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제 호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송부

접 수

발급

확 인

첨부서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기 안 · 결 재

통 지 서 작 성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수산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개 발 계 획 내 용	포획물·채취물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면 허 신 청 순 위		면허신청기간 . . .부터 . . .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우선순위자를 신청한 수면에 대한 면허의 순위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면허신청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어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1회에 한정해서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발 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포획물·채취물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수면의 위치			ha	
면허의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하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어업 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송부	→	접수 해양수산부 시·군·구	→	확인 해양수산부 시·군·구 (첨부서류)	→	기안·결재 해양수산부 시·군·구	→	발급 해양수산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 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ha
--------	--	--------	--	------	--------

포획물·채취물							
---------	--	--	--	--	--	--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	-------------	--	--	--	--	--	--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
--------	---	-----	---	----------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최초 동의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송부

접 수

발급

확 인

첨부서류

기 안 · 결 재

면 허 증 작 성

어업면허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1.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방법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5. 어장면적: ha

6. 포획물·채취물:

7. 포획·채취 방법:

8. 어업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0. 제한 또는 조건:

11. 등록일자: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어업권관리대장

어업의 종류 ()어업				어구의 명칭				어장면적 (ha)					
면허번호 제 호				어장위치									
어업권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소								계원수 명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어업권 연장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포획·채취 방법					년 월 일 ~ 년 월 일								
어업의시기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포획물·채취물					가두리 시설규모 (㎡)								
공익상 지장 여부		군사관계	어항	개항	특정지역	공원	항로	그밖의 사항	관계법령				
어장관리규약 승인번호 제()호, 승인일(년 월 일)					행사자 선정방법								
어장의 관리 선사용	종류		지정받은 관리선			승인받은 관리선							
	어선등록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호톤수(톤)												
	마력(마력)												
어장의 행사 계약관리	횟수	행사자의 대표 및 수		행사자 신분		행사계약기간				행사료(천원)			
	1차	()명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2차	()명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차	()명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4차	()명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5차	()명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업규 위반사항	횟수	위반사항			경고일			시정일					
	1차												
	2차												
	3차												
	4차												
어업권 이전·분할 또는 변경인가 사항													
유의사항													
1. 공익상 지장 여부란에는 “있음“, “없음“으로 적고, 행사자 신분란에는 “어촌계원“ 등을 적습니다. 2. 어장도를 별도 첨부합니다.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어업의 종류 및 어장 현황	어업종류			어구명칭				
	어장면적 ha (장m×폭m)			어장의 시설규모				
	어장위치							
어업권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어장관리	관 리 방 법	[] 직접관리 [] 행사계약관리		행사자수	연간 행사료			
				명	원			
	관 리 또는 행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마을 이름			
주소		마을						
생산실적	포획물·채취물		연생산량	총판매금액				
			kg	천원				
	포획·채취 방법		조업일수	어업경비	수익금			
			일	천원	천원			
어장의 표지시설	육상기점설치		어장경계시설	지정받은 관리선	선박 수	톤	톤	톤
	[] 시설함, [] 안 함		[]()개 시설함, []안 함		척	마력	마력	마력
어장의 위반 관리 및 대장 작성비치 여부	어장임대	어장빈매	무신고 휴 업	관리규약 위 반	관 리 선 불법사용	무자격자 조 업		
	생산일지	어장관리부	회계장부	회의록	증거서류	기 타		
시설내용	정치망어장			마을어장				
	어구시설규모	가두리시설규모	종묘살포량		시 설 비 율			
	ha	m ²	M/T		%			
수산업법 위반 여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 용지 60g/m²)

정 치 망 어 업 의 가 두 리 시 설 설 치 통 지 서

어 업 권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 허 번 호	() 제 호		
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어 장 의 면 적	ha	가두리시설면적	m ²
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와 승인을 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정치망어업권의 어장구역도상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대장

[illegible]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가두리시설설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1. 정치망어업의 면허번호 ()어업 제 호

2. 가두리시설의 설치증번호 제 호

3.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4. 가두리시설의 규모 가로 m × 세로 m × 깊이 m(m³)

5. 가두리설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제한 또는 조건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의 설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
장

직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채취물	
면허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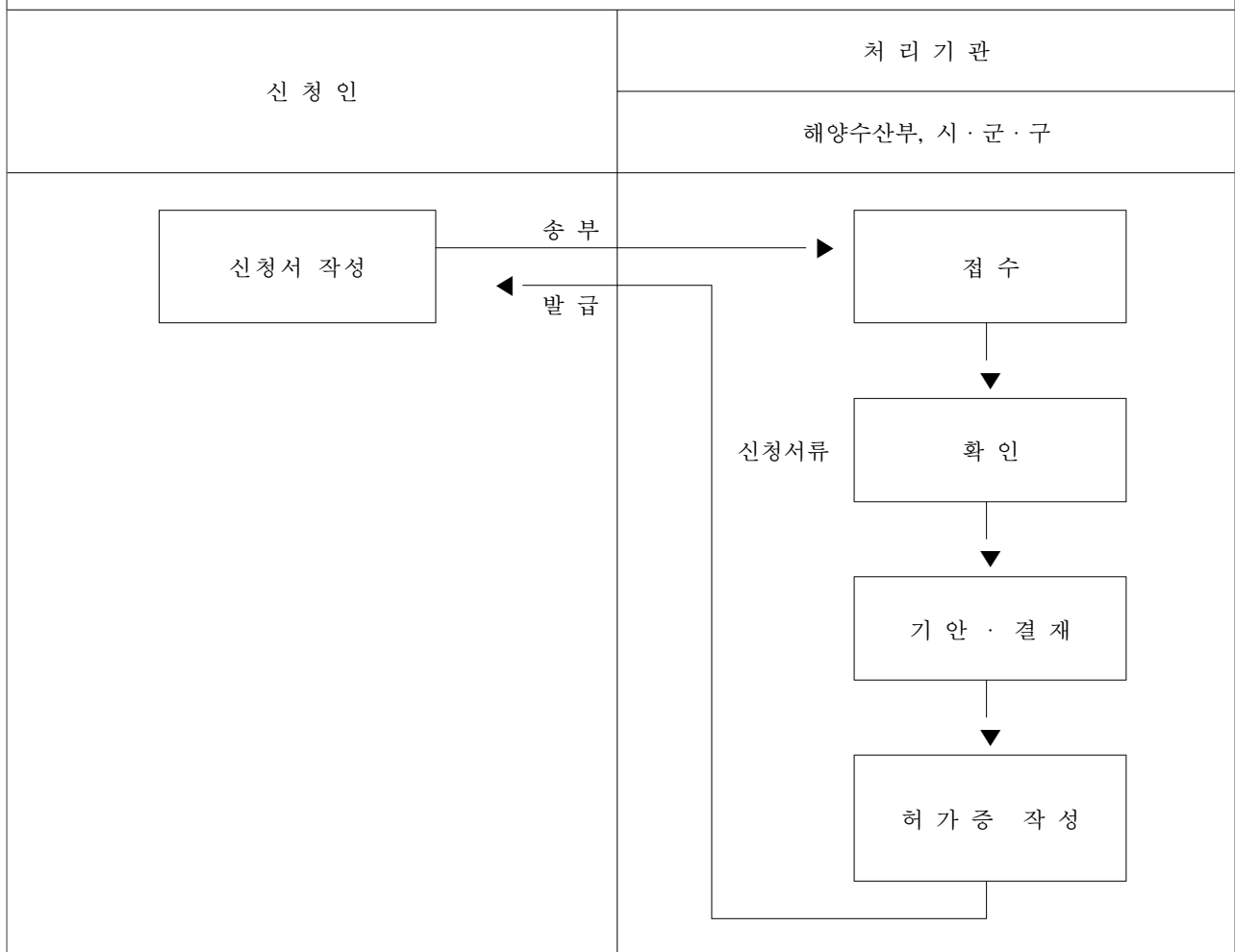
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승인(협의)신청내용	「수산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승인(협의)					
신청수면(어장)위치	(별도 첨부 도면)					
신청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적	(ha)
승인(협의)이 필요한 사유	지정항안		항 로 상			
	어 항 안		군 항 안			
	개 항 안		공 원 안			
	특정지역안		군사관계지역			
승인(협의) 신청 사유에 대한 지장 유무	항만건설상 지장					
	국토건설상 지장					
	항 로 상 지 장					
	그 밖에 공익상 지 장					
인접어업인 및 다른어업과의 이해 관계	인접 어업인과의 이 해 관 계					
	다른 어업자와의 이 해 관 계					
어 장 연 혁	과거 신청어장	과거 타인어장	신규 개발어장	과거 공동어장		
어 장 가 치 (생 산 성)	채취물	좋다	나쁘다	모르겠다		
그 밖의 참고 사항						
승인(협의)처리에 대한 의견 및 참고사항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종류			
면허번호	제호	포획물·채취물	
면허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연장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등록일자	년월일	허가번호	제호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어업권의 유효기간을 연장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어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제호	
포기일자		년월일					
포기사유							

「수산업법」 제29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발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전인가 신청서

([] 어업권 [] 지 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채취물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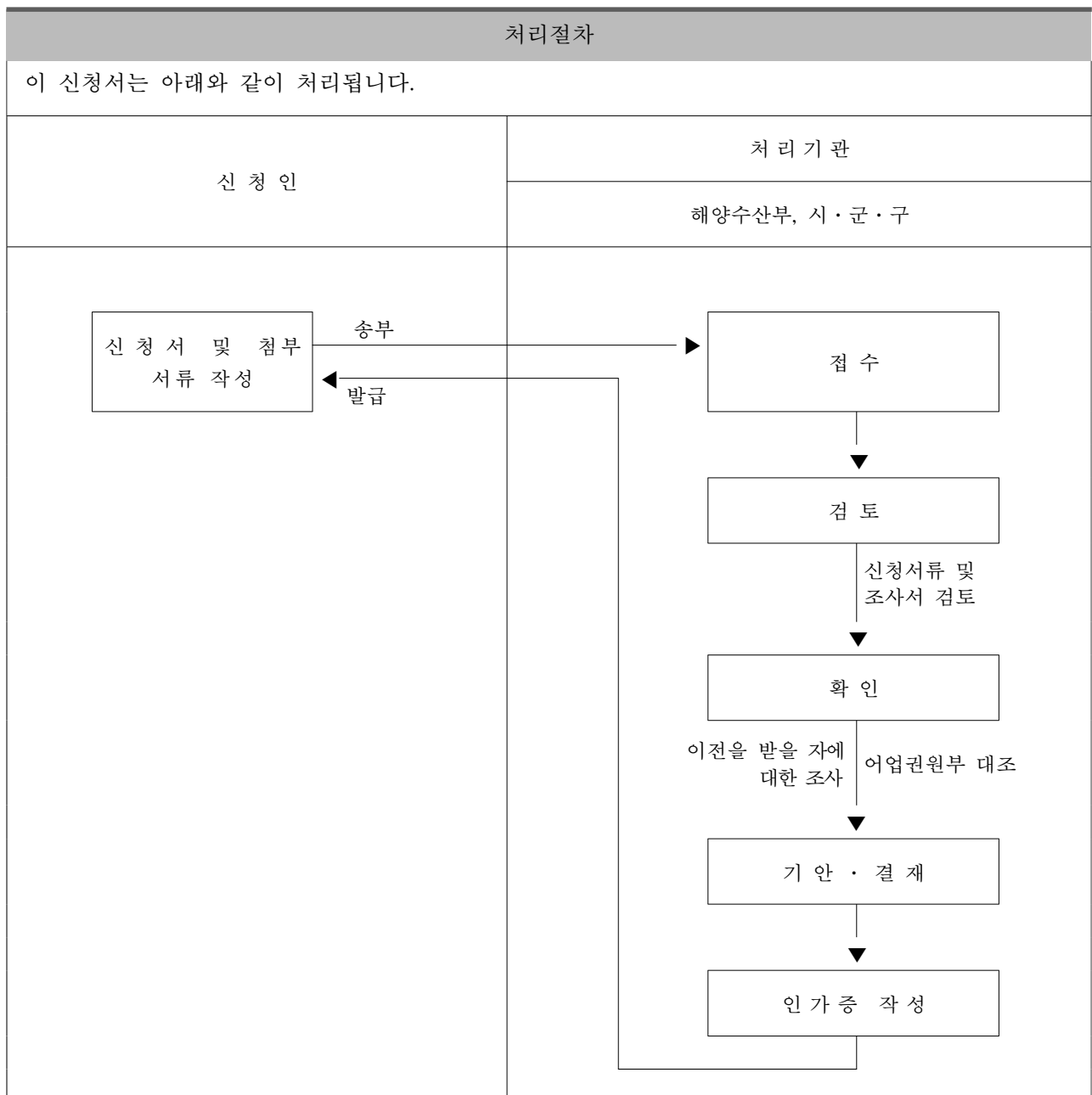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illegible]

268mm×380mm(신문용지 60g/m²)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이전을 하는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전을 받는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허 가 번 호	제 - 호	이전 받은 지분	
어업의 종류			
면 허 번 호		포획물 · 채취물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포획물·채취물	
	제 호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ha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성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소		
	성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소		
	성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소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송부
발급

접 수

확 인

어업권
원부 대조

신청서류 및 분할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기 안 · 결 재

인 가 증 작 성

어업권분할(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어업권자 및 어업권	성 명		생년월일		직업		겸업 또는 분업	
	주 소							
	어장위치							
	면허번호 제 호		면허일 년월일		면허 만료일 년 월 일		면허면적 (ha)	
	어업의 종류							
	포획 · 채취 방법					어업의 시기		
	포획물 · 채취물							
	수산법규 위반 여부							

분할 또는 변경을 받으려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		겸업 또는 분업	
	주 소							
	재산정도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계 천원	
	신용정도				경영능력			
	수산법규 위반 여부							

분 할 또 는 변 경 내 용	종 류	[] 어업권분할()ha, [] 어업권변경()					
	사 유						
	내 용	분할 또는 변경 전			분할 또는 변경 후		
그 밖의 참고사항 (먹이경쟁 및 해적생물관 계 등)							
조 사 자 의 견							
총 합 평 가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성명 인 성명 인

어업권분할(변경)인가증			
분할(변경) 받은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어업의 종류			
어업면허번호		포획물	
분할(변경)허가번호	제 - 호	분할어장 면적	ha
변경대상	변경내용		
포획물			
어업의 기간			
분할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 g /㎡]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포획물	
변경내용	포획물	변경 전		
		변경 후		
	어업의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칠 때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송 부

접 수

발 급

확 인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어 업 권
원부 대조

기 안 · 결 재

인 가 증 작 성

변경사항신고서

([]주소 · []개명 · []대표자 · []선명 · []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명		
	주소		
어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리선의 어선명			
변경사유			

「수산업법」 제20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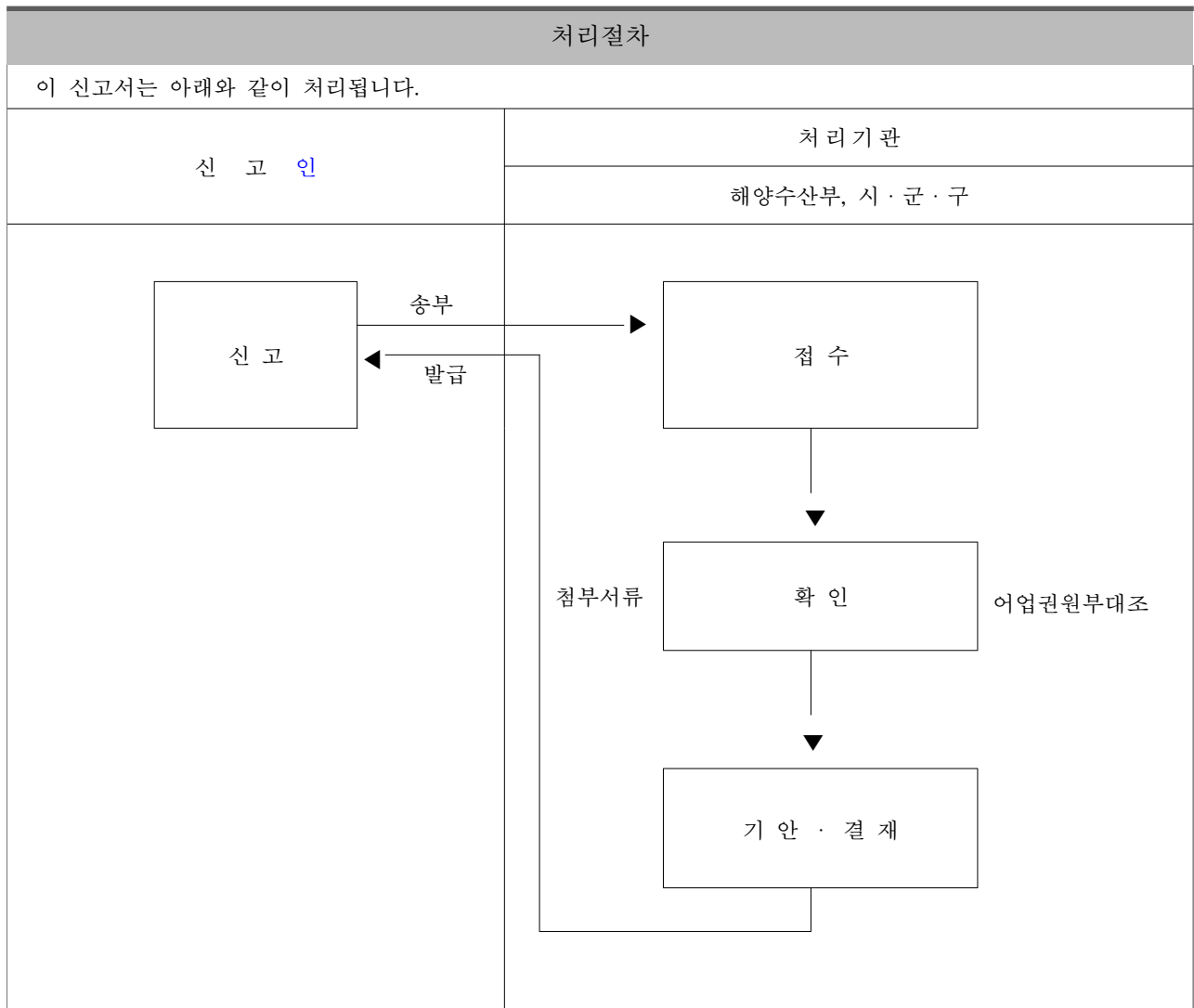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업면허증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재발급신청서

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제 호	
	분실(훼손)연, 월, 일 및 장소 년 월 일 (장소:)		
	분실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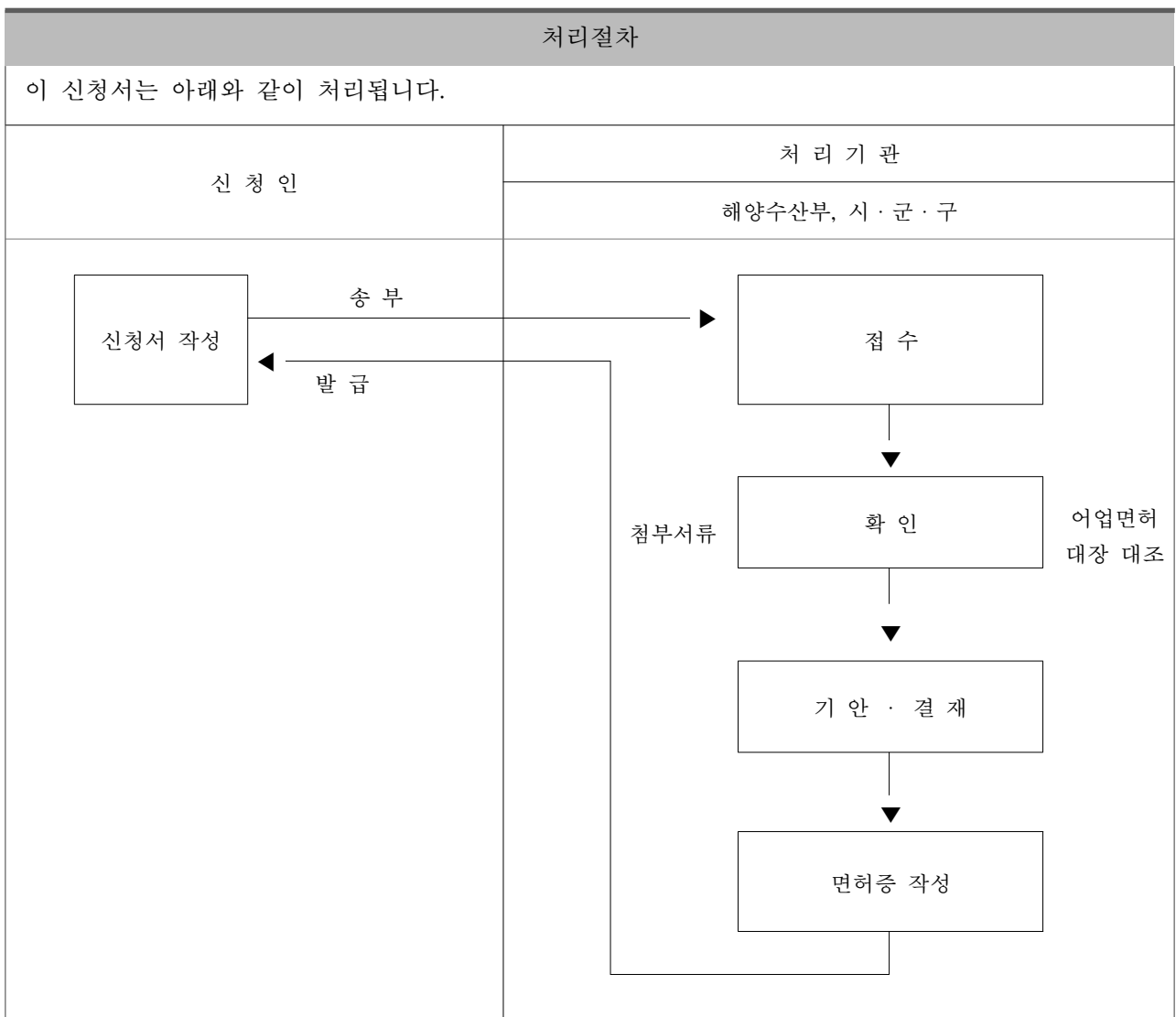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 관리선사용의 지정
[]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사 용 인 (행 사 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품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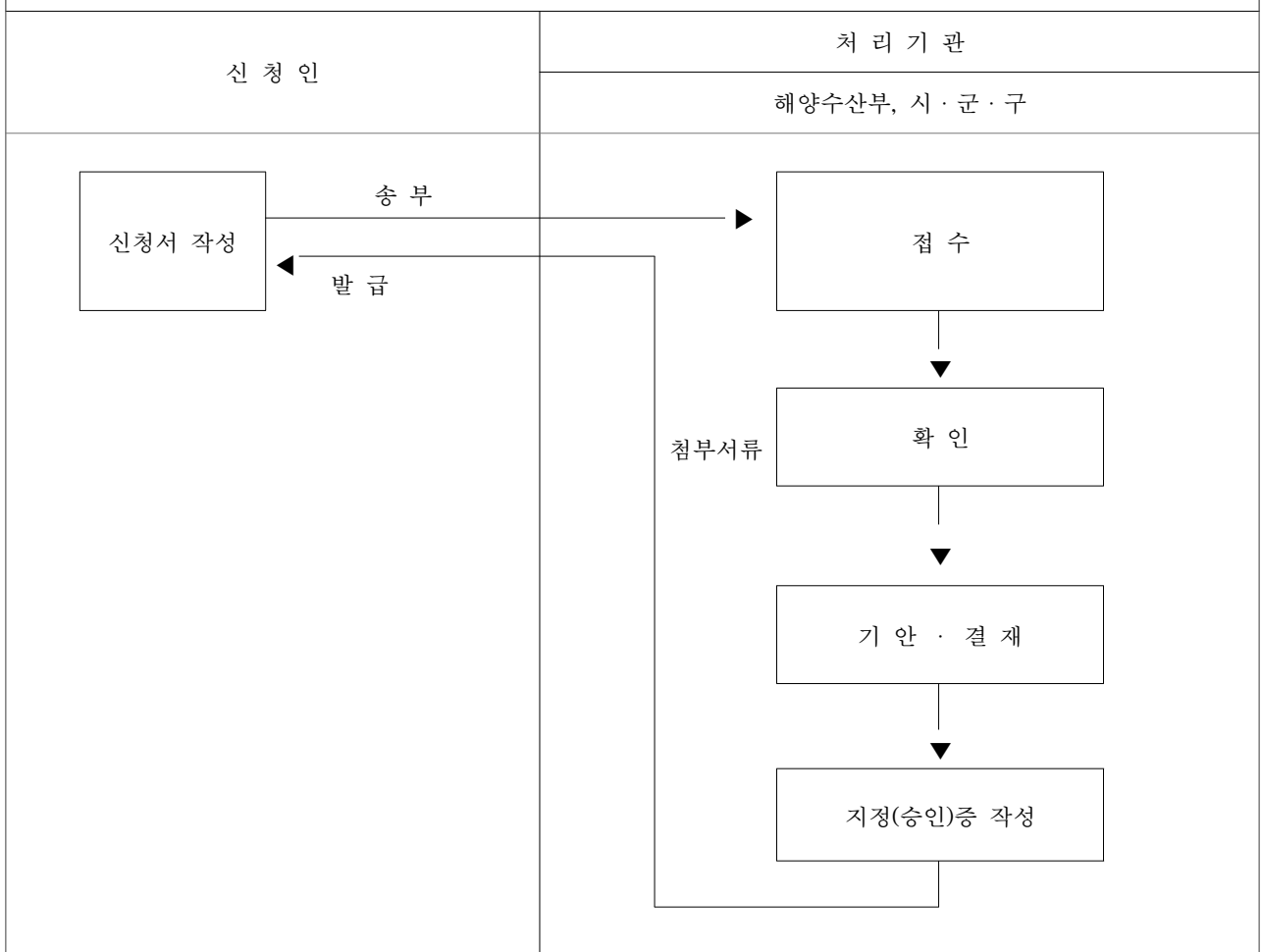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관리선 사용 지정 (승인) 번호	어업 권자	사용인 (행사자)	어업의 종류	어구	품종	사용지정(승인)한 관리선						
						어업 허가 종류	어업 허가 번호	어선명	어선 번호	톤수	마력	이용장비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관리선사용지정(승인)번호 및 기간

지정(승인)번호

제 - 호

지정(승인)기간

관리선지정(승인)을 받은 어업권자

성 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주소(주사무소)

사용인(행사자)

성 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사용하려고 지정(승인)받은 어업권자 및 어업권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어구	품 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지정(승인)받은 관리선의 내용

어선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종류	어업허가번호	어선톤수	기관마력	이용장비	선적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을 지정(어선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조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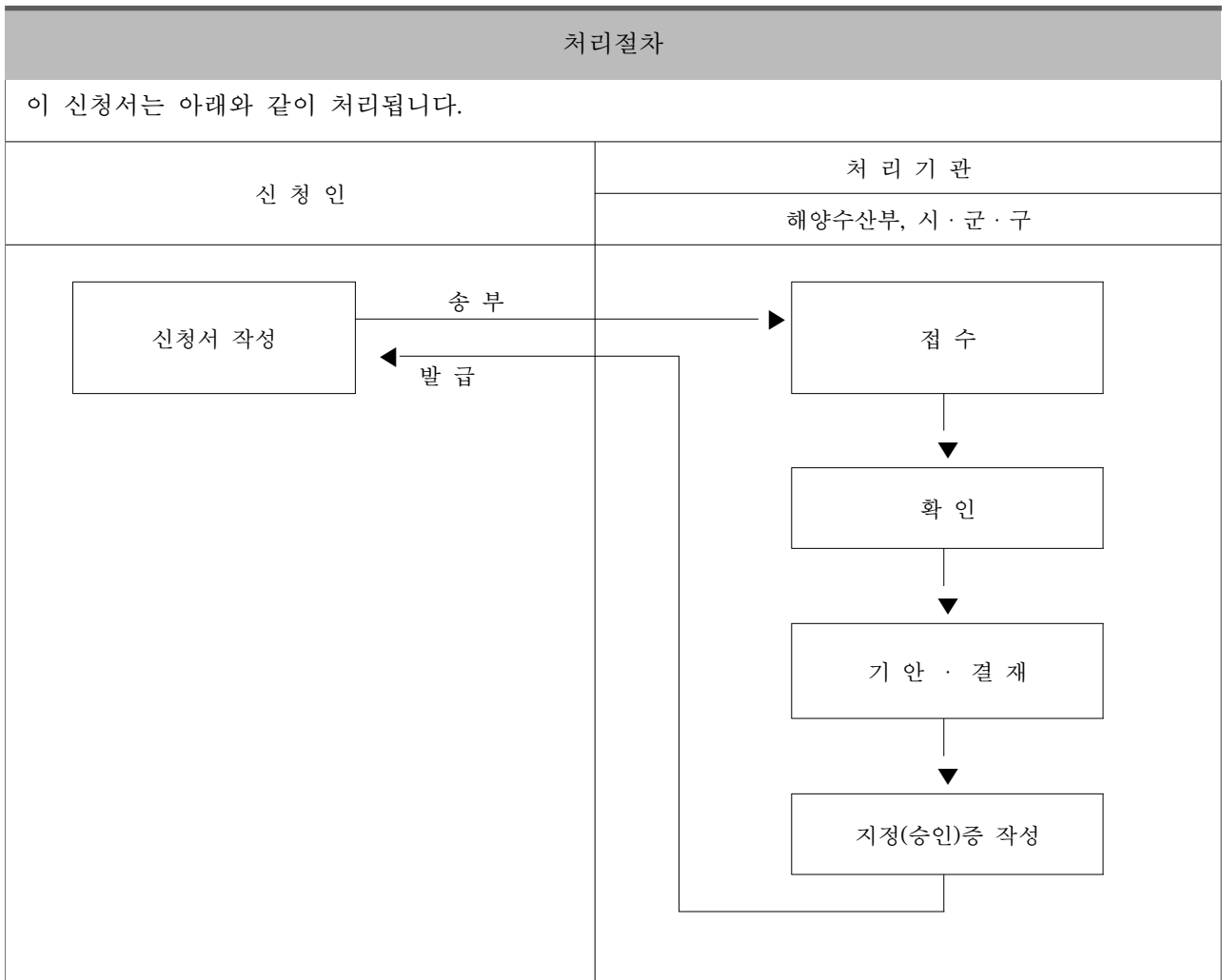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내용	어 업 의 종 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면 허 기 간 . . . 부터 . . . 까지				
	휴업 또는 연장 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개월)				
	휴업 또는 연장 사유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휴업(휴업연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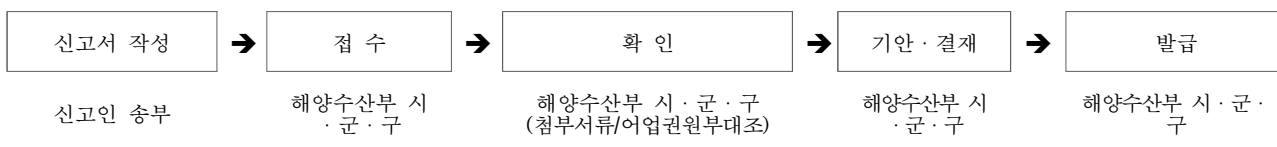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어업재개(再開)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수산업법」 제2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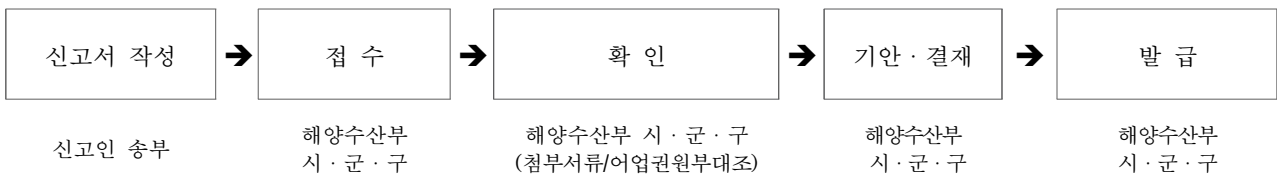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분기)해면어업면허처분상황보고서

가. 총괄표(년 월 일 현재)

(단위: 건, ha)

구분 어업별	전분기말 어업권		분기 중 포기 어업권		분기 중 취소 어업권		분기 중 면허어업권		금분기말 어업권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자연소멸어업권은 분기 중 포기어업권란에 적습니다.

나. (/)분기 해면어업 처분실적

어업의 명 칭	면허 번호	어업권자		면허면적 (ha)	면허 기간	어업권 이전인가		어업권 변경인가		그 밖의 변 동 및 처분 사항	경고, 취소 및 포기 사유	처분 연월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268mm×380mm(신문용지 60g/㎡)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 · 도: 5일 시 · 군 · 구: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 어업	구분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조업기간	포획 · 채취물 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 제2항 · 제3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 귀하

장

☞ 뒤쪽에 제출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뽕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마. 어선검사증서 사본(새우조망어업, 실뽕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뽕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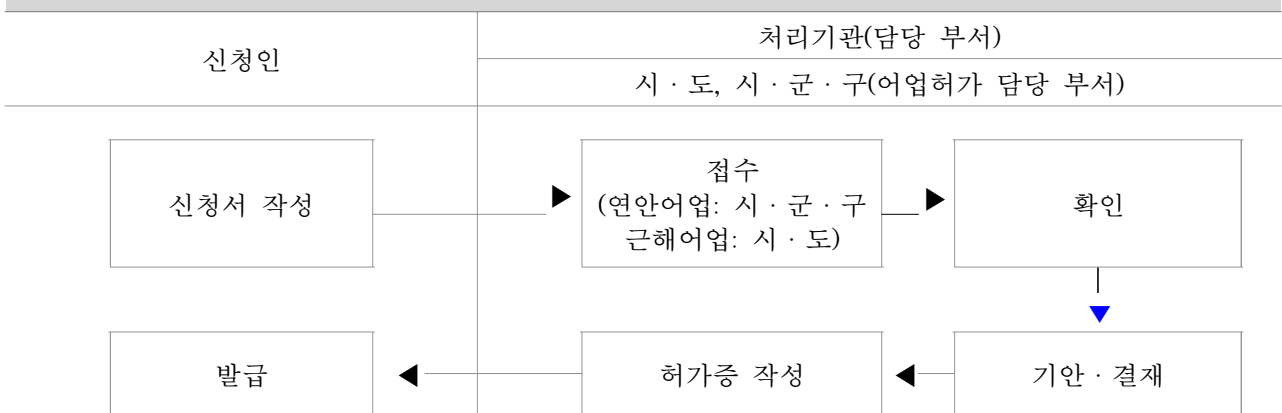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보내어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처리절차



(앞쪽)

어업허가증

No. 000000000



성명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행일: 0000/00/00

직인

허가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어선번호
0000000-0000000

86mm×54mm(PVC(비닐) 980.4g/m²)

유의사항

1. 어업허가증은 위조방지용 코팅을 해야 합니다.
2. 일련번호는 “발급연도(두 자리) + 일련번호(일곱 자리)”로 합니다.
3.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및 허가기관의 직인을 각각 인쇄·날인합니다.
4. 집적회로(IC) 칩에는 성명, 생년월일, 어선번호, 어업허가사항, 어선검사정보 등을 수록합니다.

(뒤쪽)

※ 유의사항

- 지위승계신고: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허가 신청: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전부터 5일전까지(연안·구획어업은 3일전까지)
 - 이 카드는 대한민국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이 카드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카드를 습득하거나 카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어업 허가증

(앞쪽)

허가를 받은 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허가내용	허가번호	포획대상물의 종류	어획할당량	허가해역
	조업기간		포획방법	제한 또는 조건 (뒤쪽 참조)

허가연장 내용	조업기간	포획대상물의 종류	어획할당량	제한 또는 조건 (뒤쪽 참조)

사용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총톤수(톤)	마력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의 내용	종류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간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수산업법」 제43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한시어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허가 번호	
------------	--

변경대상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63조 제2항에 따라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뒤쪽에 제출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선 대체 외의 사유로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어선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1부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다. 기존 어선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1부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에 따른 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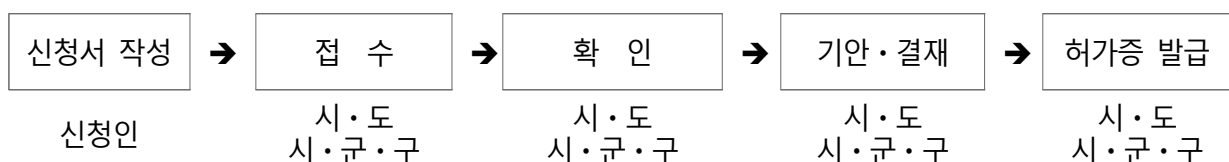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어업허가 번호		
	어업허가 기간		
	유예신청 기간		
신청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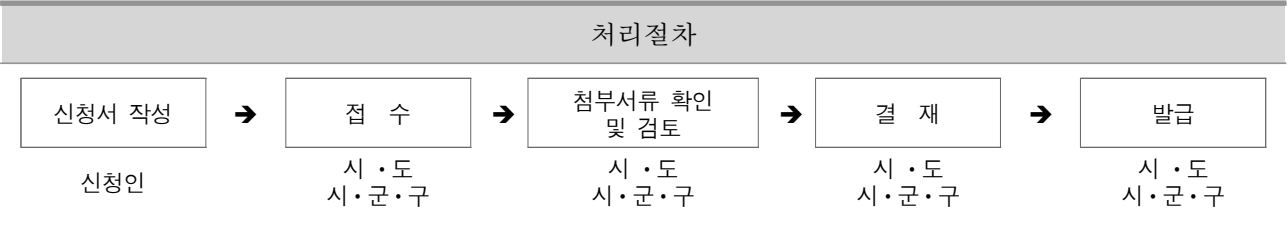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증명서 번호)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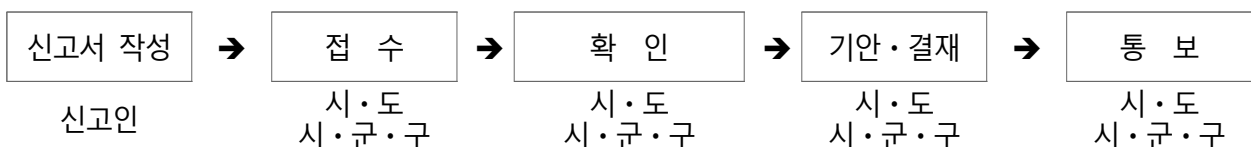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어업불허가통지서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어업의 종류			
불허 이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재활용품))

한시어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도: 5일 시·군·구: 3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마력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의 내용	구분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간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의 종류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수산업법」 제43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합니다)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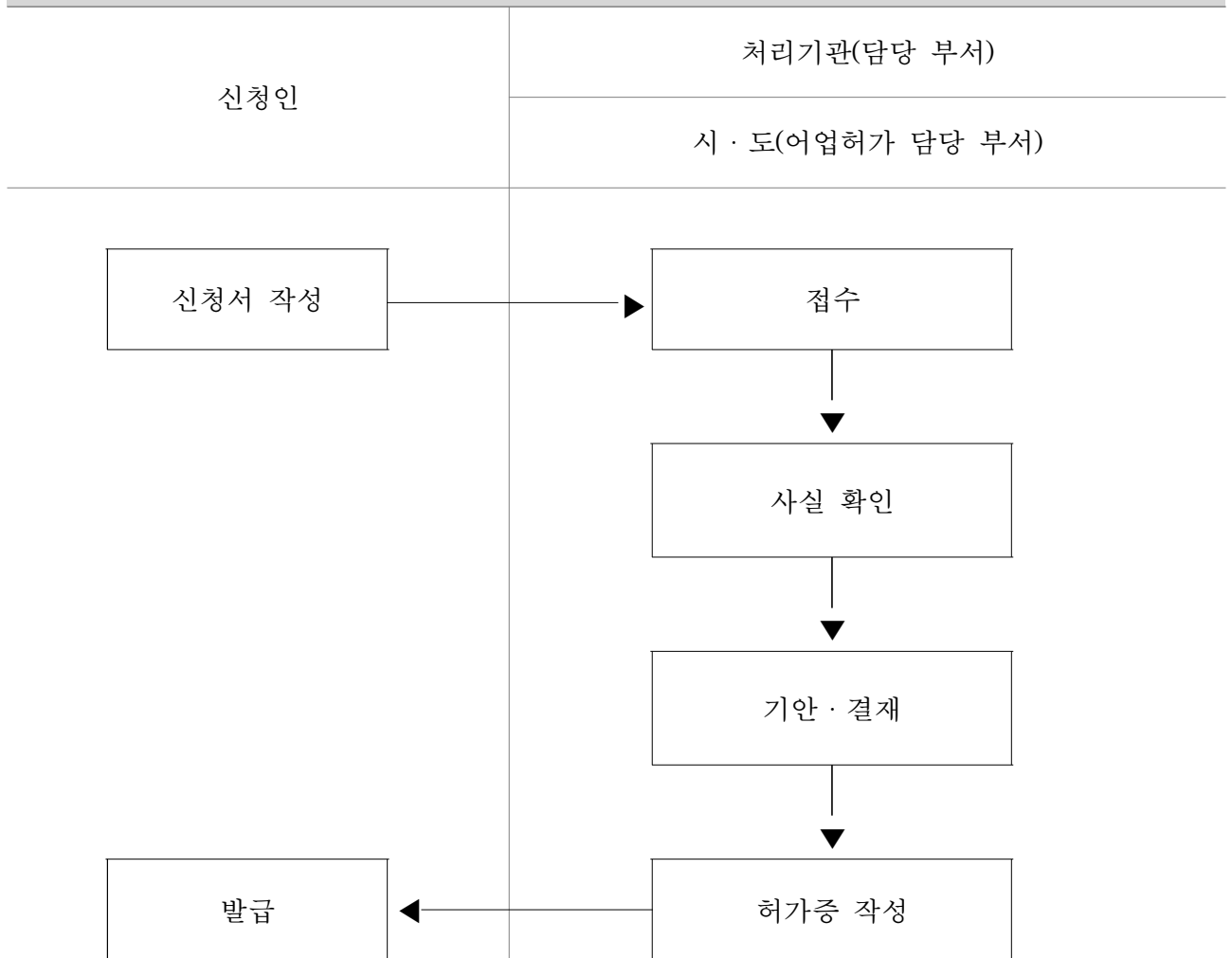
귀하

☞ 뒤쪽에 제출서류 있습니다.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 · 도: 5일 시 · 군 · 구: 3일
------	------	------------------------------------

신청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한시어업의 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의 종류	어획 할당량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내용	연장사유	연장기간

사용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총톤수(톤)	마력

기존의 허가 받은 어업의 내용	구분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간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수산업법」 제43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합니다)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 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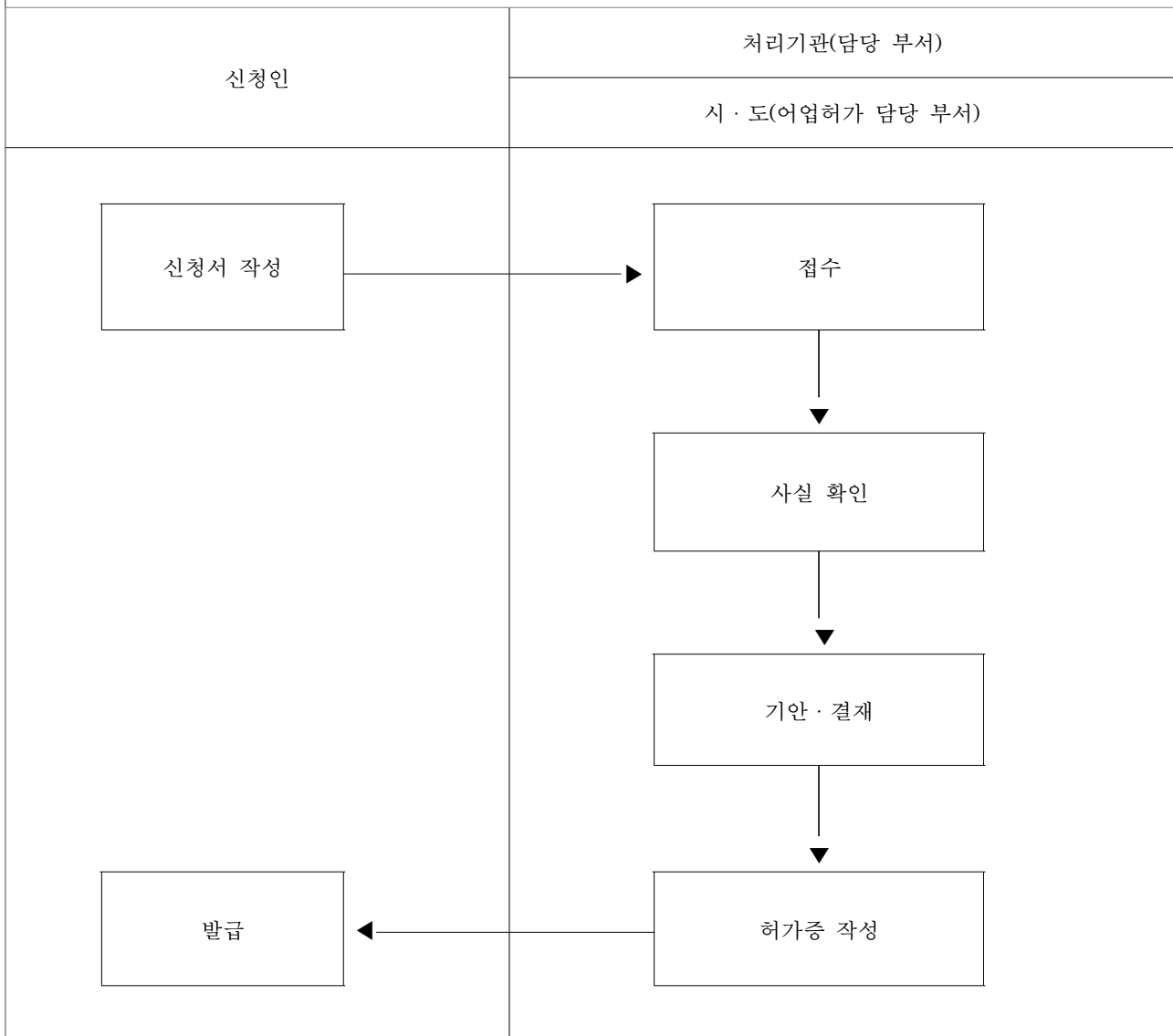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한시어업으로 인한 어획실적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1부 2. 한시어업 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접 수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허가번호 (한시어업허가번호)			
허가기간 (한시어업허가기간)			
제출기관			
제출의 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후단 및 제63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접수하고 이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주의: 이 접수증은 허가증의 정본을 수령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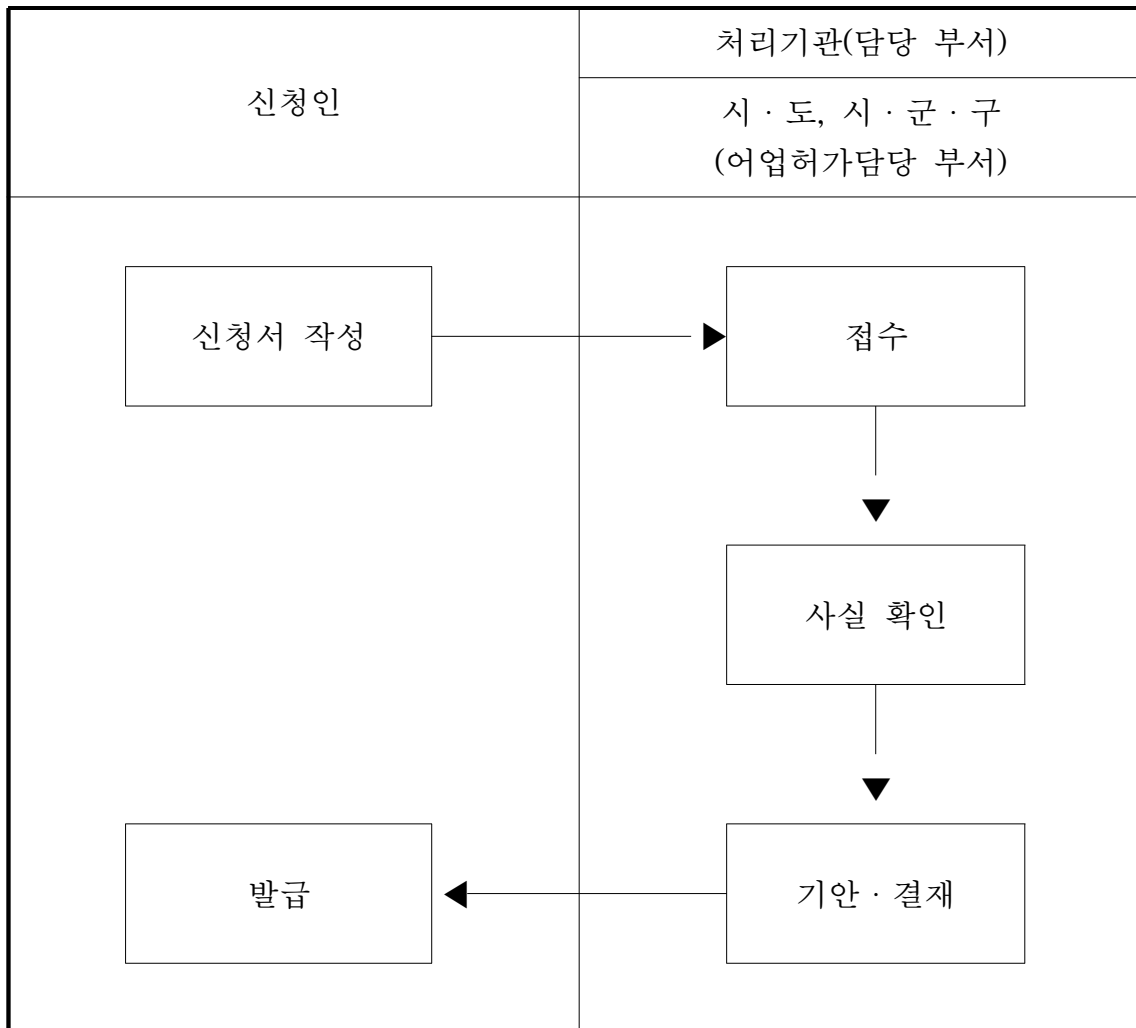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어선 또는 시설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장비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또는 시설(수면)의 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 · 채취물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5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사본(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 관련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 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 이라고 적어 넣어야 한다. 2) 어업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승계를 하는 자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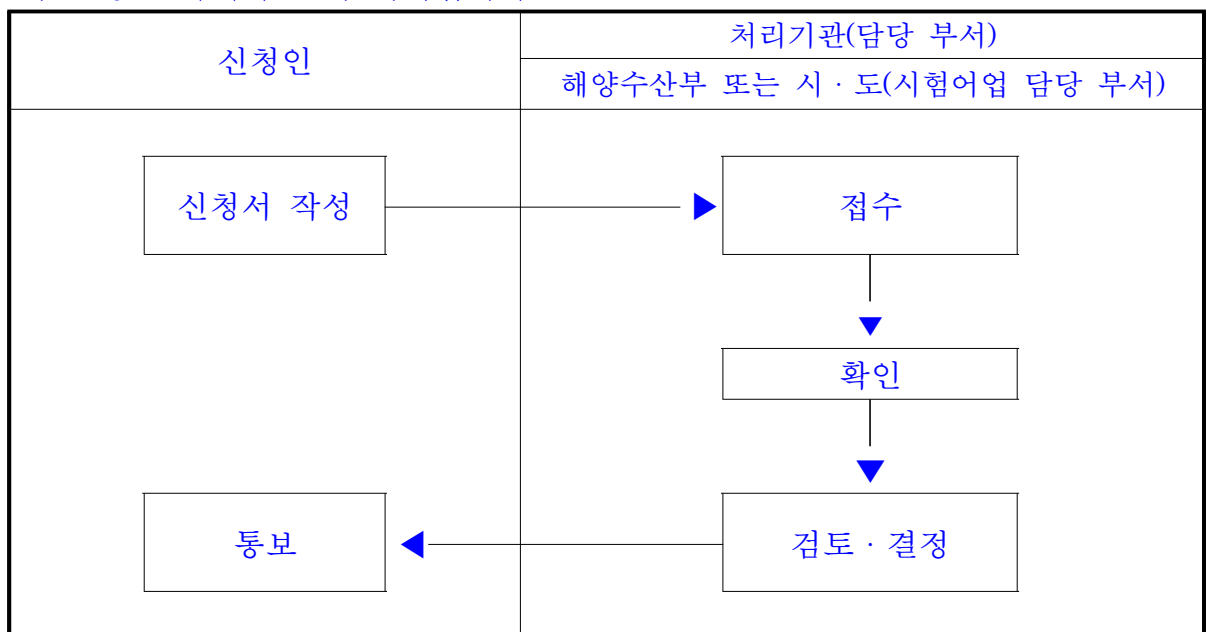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	1. 새로운 어구·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입·지출 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 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7.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시험어업 실적(년 분기)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1. 일반사항

[illegible]

2. 조업실적

[illegible]

380mm × 268mm(신문용지 54g/m²)

가. 조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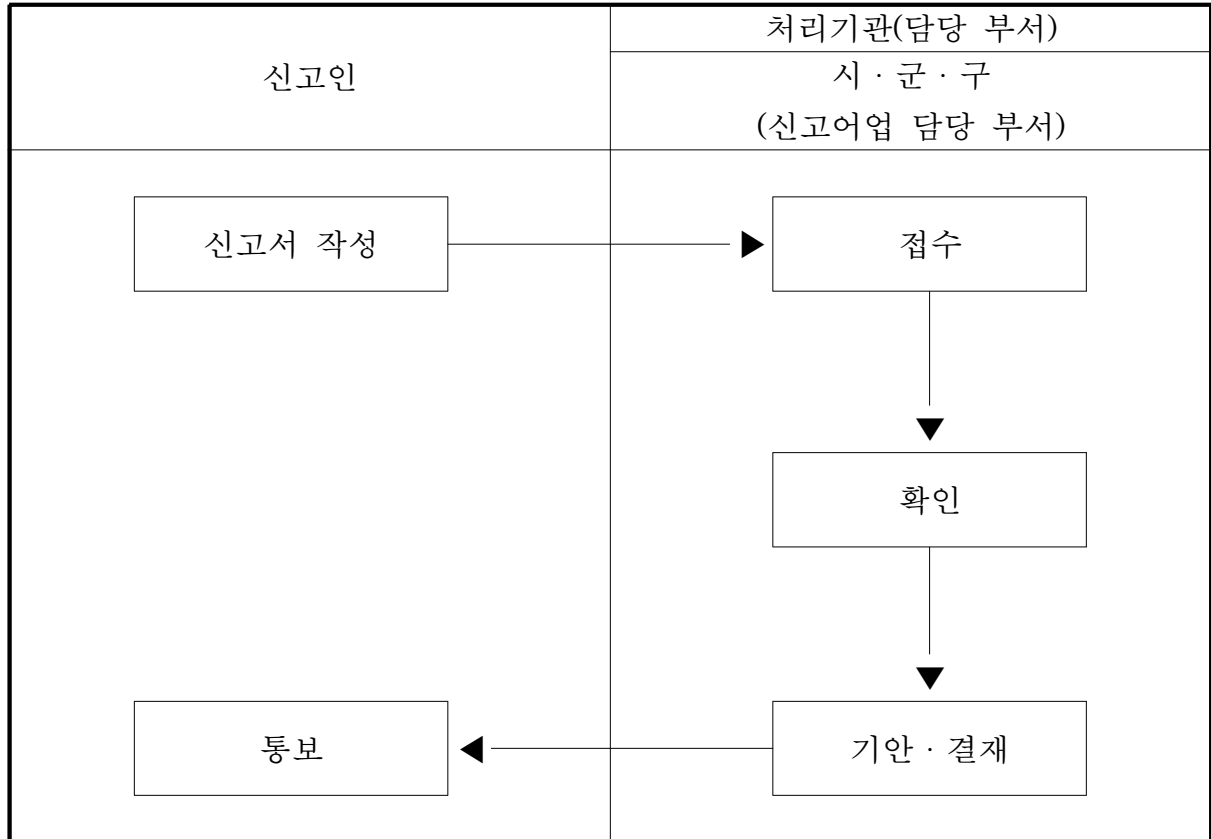
나. 손익상황 (단위: 천원)

4. 그 밖의 참고자료: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제 호

어업신고 증명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어업의 종류:

2. 어업의 방법:

3. 조업구역:

4. 포획·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유효기간:

「수산업법」 제48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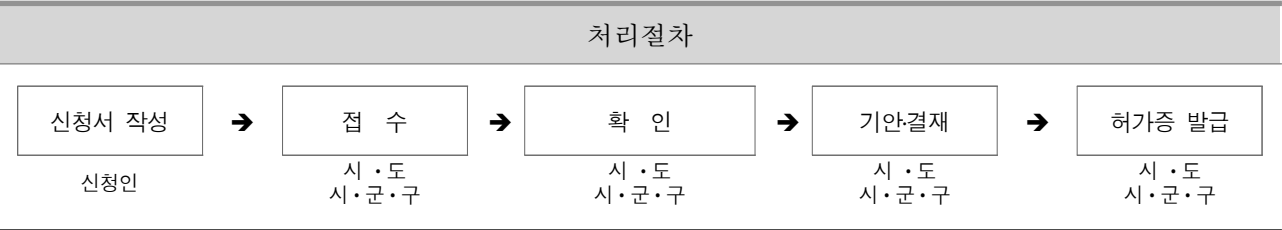
「수산업법」 제49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증명서 번호							
변경 하려는 사항	신고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변경의 사유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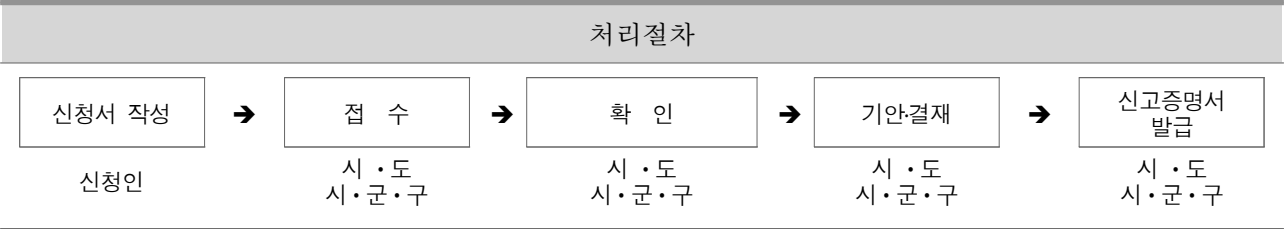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업신고 증명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신고)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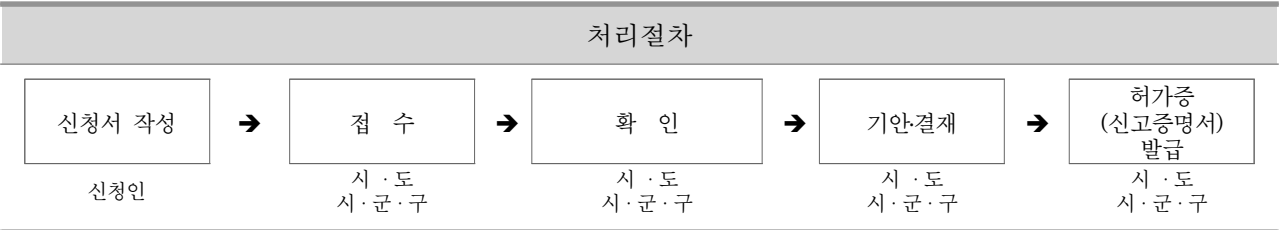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대장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앞쪽)

허가를 받은 자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주 소						
	허가연월일			(전화번호:) 허가기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명), 기관종류	총톤수(톤), 마력, 선질	길이(m), 깊이(m), 너비(m)	진수 연월일, 조선소명

허가어업	구분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과 어업의 시기	포획물 · 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주요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거지항	제한 또는 조건

210mm×297mm[백상지 80g/㎡]

※ 어업폐업 신고수리, 허가증 반납, 허가유예, 새로운 허가 등 변경내용

연월일	처리내용	사 유	작성자 (서명)

어업휴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의 기간		
	휴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어업을 휴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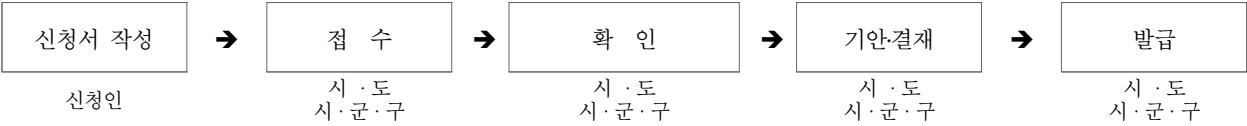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개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신고 수리기간		
	어업개시 예정일자		
	개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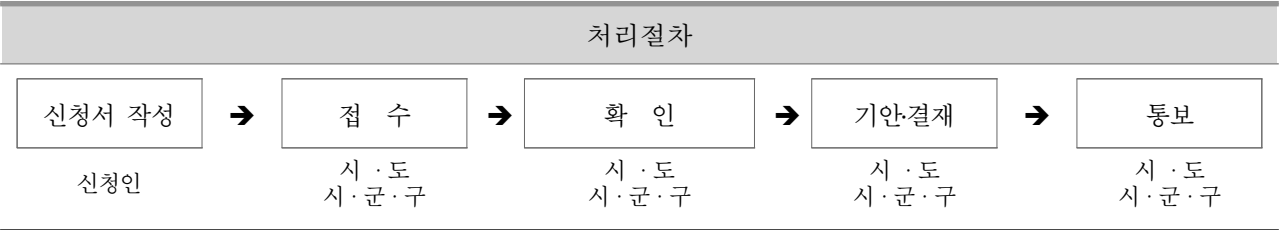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어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어선	선박명			진수연월일	
	톤수 G/T			마력수 HP	
	선적지 및 어선번호				
	주요기기 및 시설				
신청 내용	운반 수역				
	운반 대상 어획물·양식물 또는 제품의 종류				

「수산업법」 제51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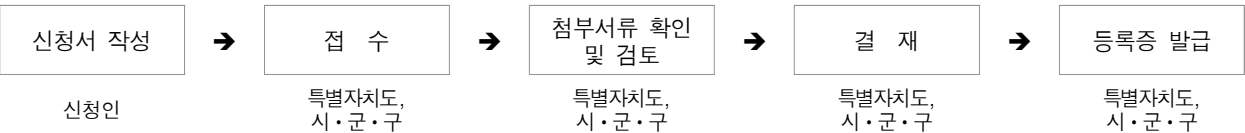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 서류	1.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제 호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 어선	선박명		톤수	G/T	마력수	HP
	선적지			어선번호		
	길이		m	냉장창고 부피	m³	
	넓이		m²	최대 적재능력	m³	
	깊이		m	최저 냉장온도	℃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주요기기 및 시설						
운반 수역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제품의 종류						
「수산업법」 제51조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제한 또는 조건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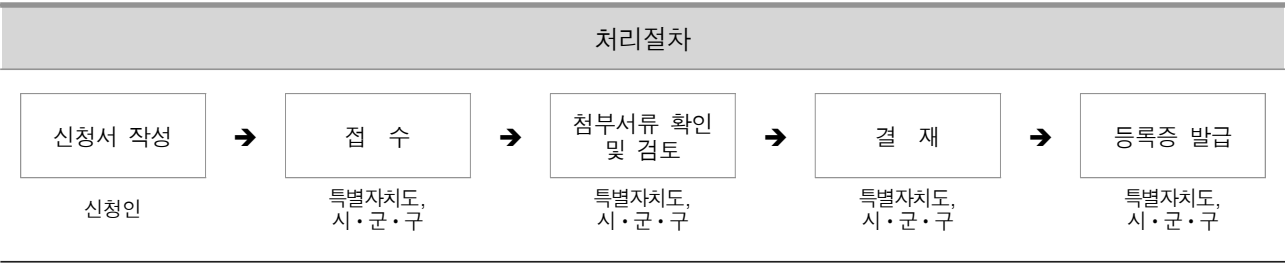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2.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폐업일				
폐업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폐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특별자치도, 시·군·구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특별자치도, 시·군·구	→	결 재 특별자치도, 시·군·구	→	폐지 통보 특별자치도, 시·군·구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의 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제4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특별자치도,
시·군·구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특별자치도,
시·군·구

➔

결 재

특별자치도,
시·군·구

➔

등록증
작성·발급

특별자치도,
시·군·구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사유			

「수산업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	--------------	--------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일시	년 월 일		
재개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	--------------	--------

어획물운반업등록대장

(앞쪽)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법인)				생년월일		
주소						
사용어선	선박명		톤수	G/T	마력수	HP
	길이	m	넓이	m²	깊이	m
냉장창고 부피	m³		최대 적재능력		m³	
최저 냉장온도	℃		유창부피		m³	
주요기기 및 시설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제품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록수역						
제한 또는 조건						
선적항			진수	년 월 일		
선박번호			조선소명			
건조비 재원 내용			참고사항			

사 항 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업수역 조정신청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조업수역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유	
수면의 위치와 명칭 및 면적	도 군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ha
해당 수면의 어업 이용실태	
다른 도와의 관계	
조정을 받으려는 수면의 한계	(도면과 면적을 표시)
조정사항	

- 붙임: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1부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1 부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1부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 /㎡(재활용품))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확인신청 어구	가. 어구의 종류		
	나. 어구의 수량		
	다. 어구의 보관위치		
신청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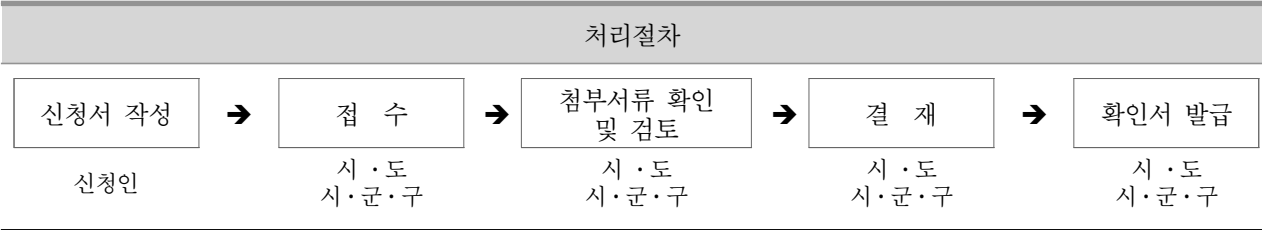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확인을 요청한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

발급번호 : 기관명 제 0000-00호

1. 신청인 성명
2. 허가번호
3. 확인일시 및 장소
4. 확인어구 : (현장사진, 어구겨냥도, 어구구성도 첨부)

위 어구는 「수산업법」 제61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어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면제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사유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단서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시설물 철거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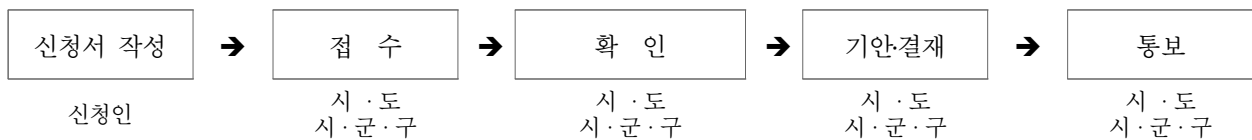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품)]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시설어구
	면허번호	면적	품종
	제 호	ha	
	수면의 위치와 구역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어장시설물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규모(㎡)	수량(개)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제3항에 따라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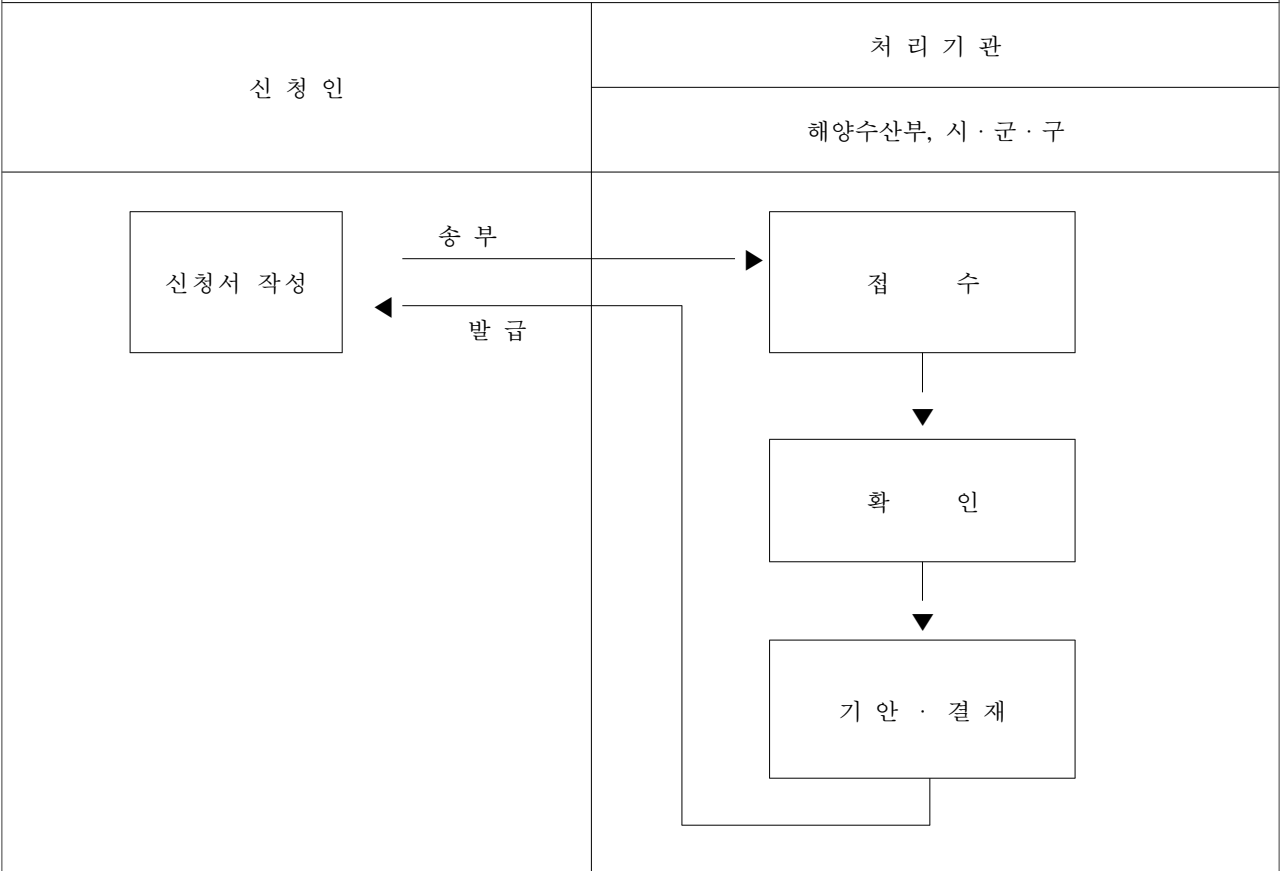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유형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세요.	어구 생산업()	어구 판매업()	어구 수입업()	어구 수리업()
어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 제조장/수입국	어구 판매장	어구 보관장소
기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생산업·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시·도
시·군·구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시·도
시·군·구

→

결 재
시·도
시·군·구

→

확인서 발급
시·도
시·군·구

어구 생산(수입) / 판매 정보 기록 장부

[illegible]

(종류: , 규격: , 재질: , 형태:)

① 연월일	② 회수량	③ 처 리		⑥ 미처리량	⑦ 비 고	⑧ 결재	
		④ 처리량	⑤ 무게(kg)				

작성방법

1. 폐어구를 회수·처리할 때마다 날짜별로 적고, 월말에 합계를 적습니다.
 2. 단위는 무게를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을 수 있습니다.
-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청구내용	어업권 또는 인공 시설물의 표시	④어업의 종류	⑤면허번호 제 호
		⑥인공시설물의 종류	⑦공작물의 규모 m ²
	⑧처분사항		⑨처분일자 년 월 일
	손실의 내용	⑩손해액	
		⑪명세	
		⑫산출근거	
	⑬손실액과 명세 및 산출방법		
⑭청구보상금액 일금 원정			

「수산업법」 제88조제1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어업권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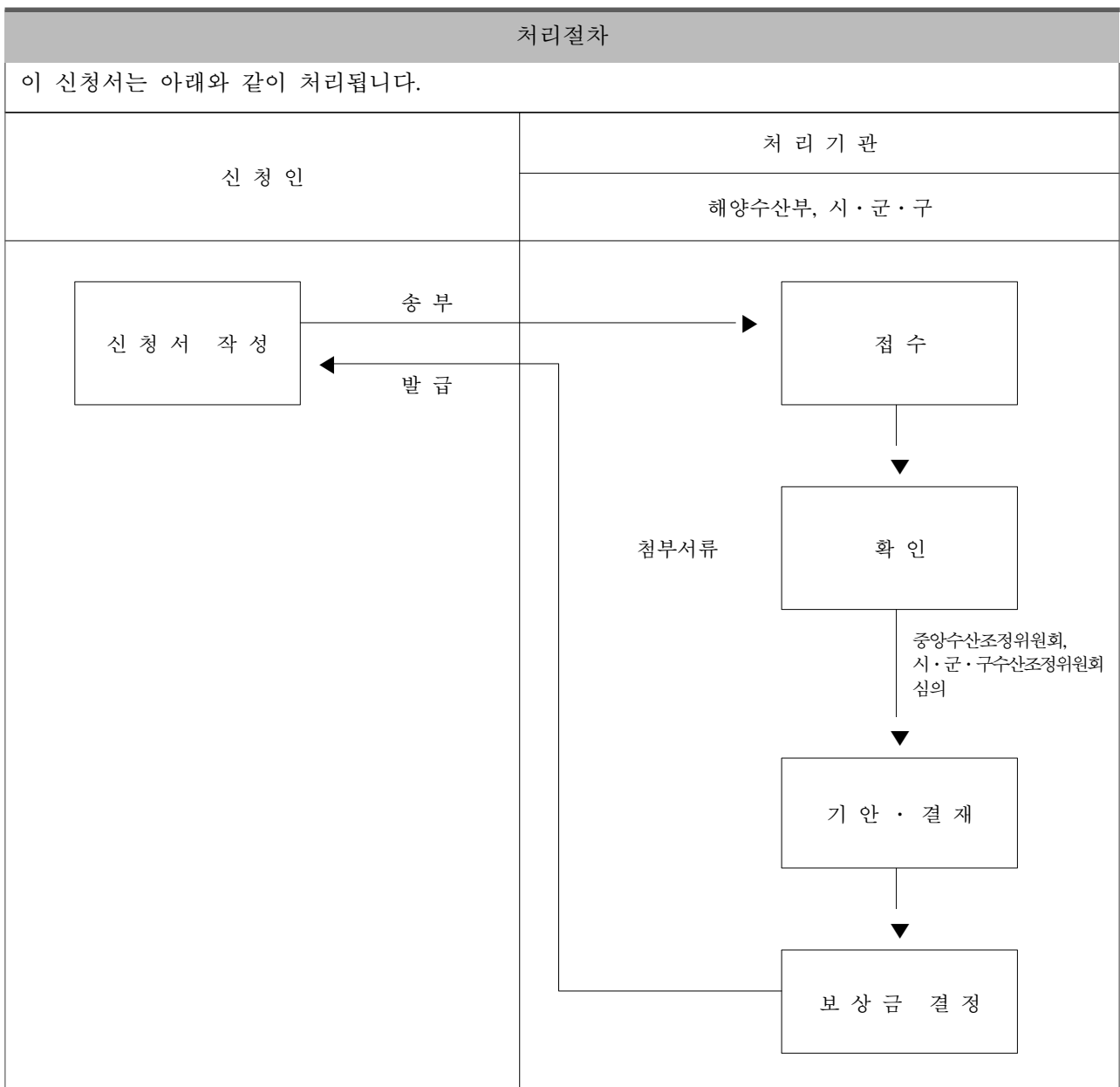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작성방법

① ~ ③란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 관 명

수신자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경유)

제 목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신청

「수산업법 시행령」 제56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에 따라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의 설립근거	근 거 법 령			
	허 가 기 관			
	허 가 번 호			
	설 립 일 자			
기관의 대표 및 구성원수	대표자	성 명		
		주 소		
	조사기관의 조 사구성원 수		상임조사자 수	
			특별조사자 수	
			보조조사자 수	
지정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붙임: 1. 손실액 조사계획서 1부.
2. 기관설립증서 사본 1부.
3. 기관의 조직표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

기관명

주 소

1. 지정번호 어업손실액조사기관지정 제 호

2. 대 표 자

성명		직위	
주소			

3. 조사자 구성원 수

상임조사자 수	특별조사자 수	보조조사자 수
(명)	(명)	(명)

4.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56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입어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도 14일
			시·군·구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		제 호
	제한을 하려는 사항		
	제한을 하려는 기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신청인의 목적과 사유	목적	
사유			

「수산업법」 제9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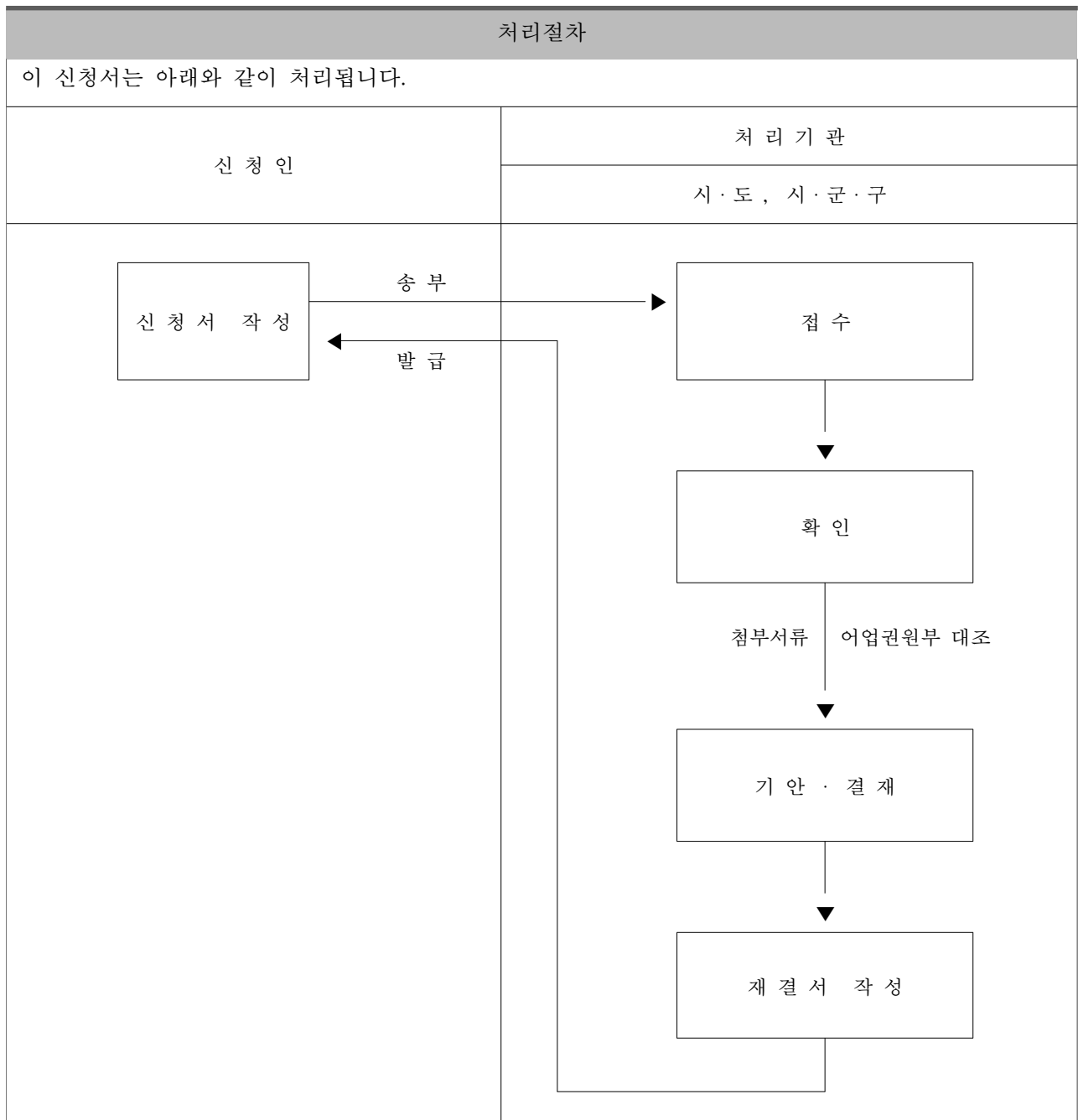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장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도	14일
			시·군·구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장의 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분쟁의 내용			
	재결신청의 목적과 내용	목적	내용	
	그 밖의 사항			

「수산업법」 제92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받으려고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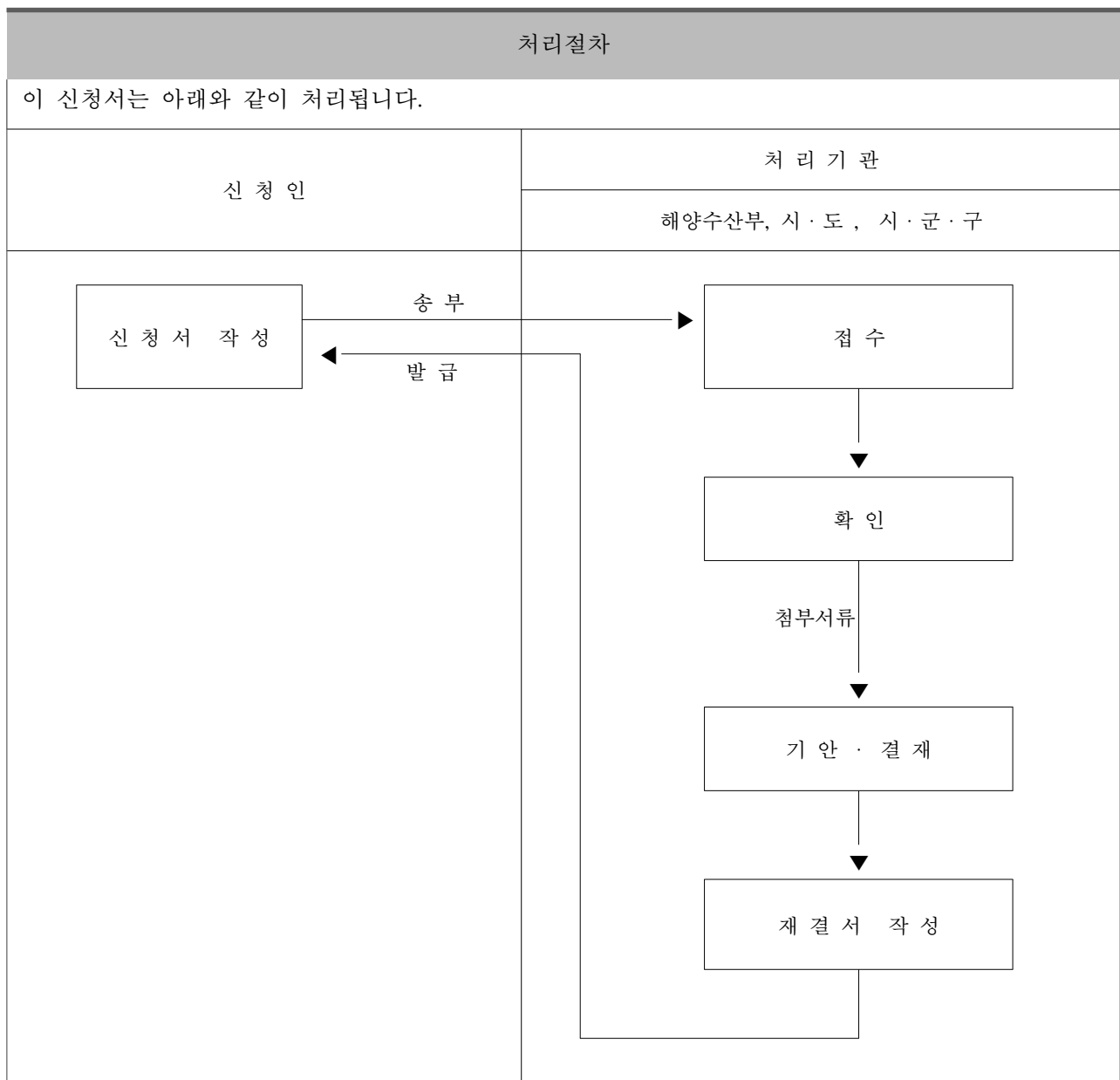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재 결 서

문서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의 취 지		
재 결 의 주 문		
사 유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허가처분 상황보고(반기말)

1. 어업허가 처분상황

(단위: 건, 척, 명)

어업의 종류	전반기말 유효허가			기간 중 처분상황		기간 중 소멸상황		해당 반기말 유효허가			반기말 유 예현황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합계												

※ 작성요령

1. 보고서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으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2. “기간 중 처분상황” 란에는 반기 동안에 허가를 처분한 전체 건수 및 척수를 적습니다.
3. “기간 중 소멸상황” 란에는 반기 동안에 허가가 소멸된 전체 건수 및 척수를 적습니다.
4. “반기말 유예현황” 란에는 현재 허가가 유예되어 후에 허가처분이 가능한 건수 및 척수를 적습니다.
5. “척수” 란에는 부속선을 포함하되, 전체 척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어업’ 을 기준으로 분류한 어선 수를 적습니다.
6. “승선원” 란에는 부속선을 포함한 어선수(척수)를 기준으로 승선원수를 적습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어업허가 변동상황

(단위: 건)

어업의 종류	① 전반기 말유효 허가	② 해당 반기 말유효 허가	변동상황													
			③ 계	기간 중 처분상황						기간 중 소멸상황						
				④ 소계	기간 만료 처분	전입	유 예 해 제	신 규 처 분	기 타	⑤ 소계	기간 만료 소멸	전 출	신 규 유 예	허 가 취 소	감 척 사 업	자 연 소 멸
합계																

※ 작성요령

1. “기간만료처분” 란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허가를 처분한 건수를 기록합니다.
2. “전입” 란에는 종전에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았던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 종전의 허가를 폐지 또는 소멸시키고 새로운 허가를 처분한 건수를 기록합니다.
3. “기간만료소멸” 란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수를 기록합니다.
4. “전출” 란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았던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허가를 처분하게 됨으로써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기록합니다.
5. “허가취소” 란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건수를 기록합니다.
6. “감척사업” 란에는 감척사업으로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기록합니다.
7. “자연소멸” 란에는 어업폐업신고 등으로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기록합니다.
8. “기타” 란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에 어업의 종류별·변동사유별 내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 등을 기록하고 첨부합니다.

※ 어업허가 변동상황은 “②-①=③=④-⑤” 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어업허가 유예상황

(단위: 건, 척)

[illegible]

※ 작성요령

1. 반기말 현재 허가가 유예되어 금후 허가처분이 가능한 건수 및 척수입니다.
2. “척수” 란에는 부속선을 포함하되, 전체 척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어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어선 수를 기록합니다.
3. “기타” 란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에 어업의 종류별·유예사유별 내용을 기록해 첨부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어업허가 및 신고 처분상황 보고(반기말)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호에 따라 어업허가 및 신고 처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한시어업 및 신고어업 처분상황 (단위: 건)				
어업의 종류	전반기말 유효 건수	기간 중 처분 건수	기간 중 소멸 건수	해당 반기말 유효건수
2.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전반기말 유효 건수	기간 중 처분 건수	기간 중 소멸 건수	해당 반기말 유효건수
어구생산업				
어구판매업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 /공무원의 공식 이메일 주소 /공개구

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근해어업 보고서

(앞쪽)

1. 어선번호:
2. 업 종:
3. 선 명: (호출부호:)
4. 주소 · 성명
- 어업허가를 받은 자:
- 해당 어선의 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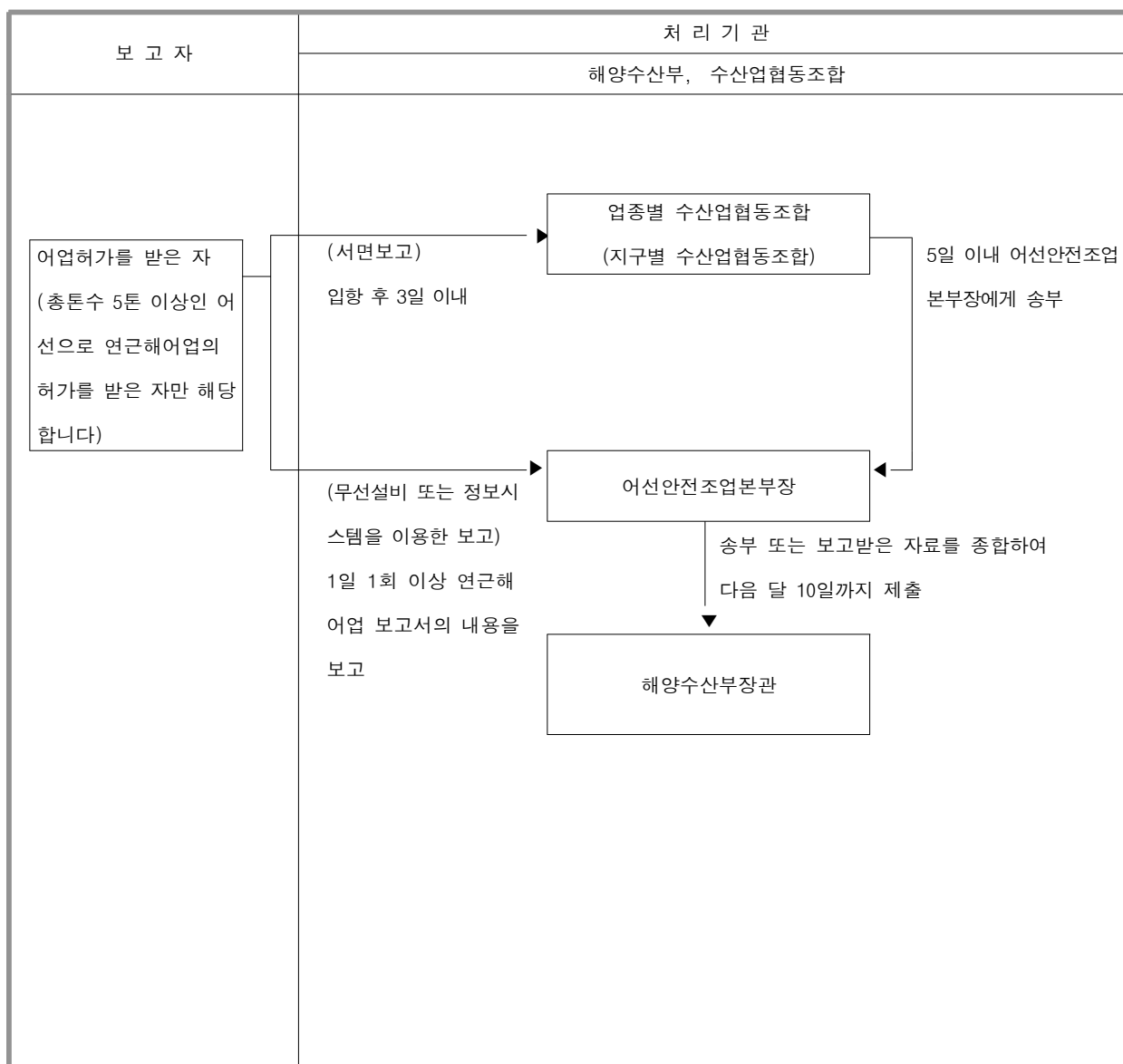
조업일	조업해구	인망횟수	어종별 어획량(kg)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뒤 쪽)

※ 연근해어업 보고서 작성요령

1. 어선번호는 「어선법」에 따라 어선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적습니다.
2. 업종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항
차에 조업한 업종을 적습니다.
3. 선명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의 명칭을 적고, 호출부호는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가입한 호출부호를 적습니
다.
4. 조업일은 조업한 날짜를 적습니다.
5. 조업해구는 조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소해구 또는 위도·경도로 적습니다.
6. 인망횟수는 일일조업 중 인망한 횟수를 적습니다.
7. 어종별 어획량은 어종별로 구분하여 kg 단위로 적되, 어획실적이 많은 어종부터 10개까지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근해어업 보고서 제출 절차 및 보고 요령



(월)연근해어업 보고서

(앞쪽)

- 1. 어선번호:
- 2. 업 종:
- 3. 선 명:
- 4. 주소·성명
 - 어업허가를 받은 자:
 - 해당 어선의 선장:

조업일	조업 해구	인망 횡수	어종별 어획량(kg)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 월별 누계

조업 해구	조업일	인망 횃수	어종별 어획량(kg)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 연근해어업 보고서 제출 절차 및 보고 요령

